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8 차 정 무 위 원 회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 | | | | |
|---|------------|---|---|---|
| ▣ | 일 | 반 | 회 | 계 |
| ▣ | 특 | 별 | 회 | 계 |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및 | | |
| | 출 | 연 | 연 | 구 |
| | | | 기 | 관 |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 문 위 원 이선주

제1장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I . 개 요	1
1. 총 괄	1
2. 세입·세출예산안	4
3. 성과계획서	18
4. 성인지예산	19
II. 검토의견	20
1.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법정처리기한 준수율 제고 필요	20
2.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23
3. 인권보호관 지원: 대테러 인권보호관 업무 실적 강화 필요	32
4.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내역사업의 예산 증액규모 및 홍보 주제 검토 필요 등	37
5.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종합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앞당길 필요 등	46
6.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기후시민회의 논의 결과 환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 필요	56
7.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62
8.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K-토론나라 참석수당 일부 조정 필요	70
9.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시민통통 플랫폼 지속 운영 여부 결정 필요	74

제2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I. 개 요	79
1. 2026년도 예산안 규모	79
2. 비목별 예산안 내역	79
3. 예산안 내역	82
II. 검토의견	87
1. 연구기관 공통: PBS 폐지와 쟁점	87
2. 연구기관 공통: 정보시스템 관련 일반사업을 기본사업으로 변경 필요 ·	107
3. 연구기관 공통: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예산 증액 필요	115
4. 연구기관 공통: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철저한 관리·운영 필요 ·	120
5. 연구기관 공통: 외부위탁용역·자문 등 표기 공통규정 마련 필요 ·	129
6. 연구회 공통: 대외활동 관리 철저	135
7. 한국행정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적정 비목 편성 필요	143
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50
(1)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등의 사용기준 마련 필요 ·	151
(2) ODA 정책 개선 필요	154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중복 우려 해소 필요	158
10. 산업연구원: 한-동남아 정책연구협력센터 사업 내실화 필요 ·	162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예산 반영 필요	169

12.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배상금 지급 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172
13. 한국법제연구원: MOU 체결을 전제로 한 기관장의 국외여비 감액 필요	176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81
(1)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 수행방식 변경 검토 필요	181
(2) 조세교육운영사업 운영방식 개선 필요	185
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환경 변화를 감안한 사업 추진 필요	... 187
16. 한국환경연구원: 지구환경정보센터의 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	 192

제1장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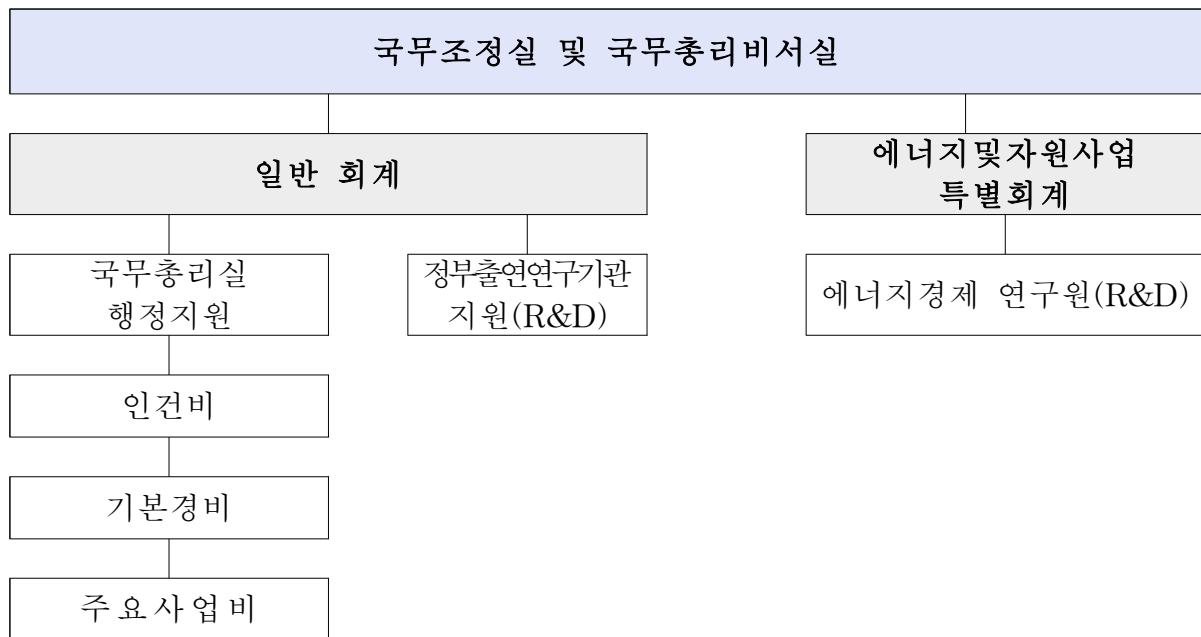
I. 개 요

1. 총 괄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구조도〉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7,9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126억 8,500만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54억 8,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279	279	-	-
일반회계	279	279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	-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671,480	838,171	166,691	24.8
일반회계	659,106	812,685	153,579	23.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374	25,486	13,112	106.0

주) 총계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2026년도 재정운용 방향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로 두고,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5대 중점과제를 설정·추진한다는 계획임.

〈2026년도 5대 중점과제〉

①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 국정과제의 체계적 점검·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을 통하여 국정성과에 대한 대국민 체감 제고
②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 적극적·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해 원활한 국정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대테러·미세먼지 대책 등의 조정 및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 보호
③ 규제개혁
○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④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적 중장기 과제 이행 지원
⑤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 국무총리 국정활동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협력 증진

(자료: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

-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도에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것을 핵심전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전략목표 1 :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45,548	100.0
합 계	45,548	100.0

(출처: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민간경상보조금 정산금 및 국고계좌 이자 세입조치 등 기타재산이자 수입 200만원과 과오지급금 반납 및 정산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2억 7,700만원을 합하여 2억 7,900만원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규모임

〈2026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년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279	279	-	-
○ 기타재산이자수입	2	2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77	277	-	-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126억 8,5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대비 1,535억 7,900만원(23.3%)이 증액 편성됨.

- 2025년도 예산 대비 인건비는 19억 7,600만원(3.3%)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1,200만원(0.1%) 증가하였음. 주요사업비는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에서 23억 2,000만원 증액되는 등 24억 5,700만원(4.8%) 증가하였고, 출연금은 한국개발연구원 출연금이 170억 7,700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연금이 124억 6,200만원 증액되는 등 1,491억 3,400만원(28.0%) 증가함.

〈202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659,106	812,685	153,579	23.3
인건비	60,274	62,250	1,976	3.3
기본경비	14,235	14,247	12	0.1
주요사업비	51,579	54,036	2,457	4.8
출연금	533,017	682,152	149,134	28.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가. 인건비

-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622억 5,0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9억 7,600만원(3.3%) 증가함.

- 보수, 기타직보수 및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 반영으로 인하여 2025년도 예산 대비 각각 12억 8,900만원, 6억 7,400만원, 1,200만원 증가함.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60,274	62,250	1,976	3.3
○ 세목별	60,274	62,250	1,976	3.3
- 보수(110-01)	58,468	59,757	1,289	2.2
- 기타직보수(110-02)	1,343	2,017	674	50.2
- 연가보상비(110-05)	463	475	12	2.6
○ 기관별	60,274	62,250	1,976	3.3
- 국무조정실	38,485	40,286	1,801	4.7
- 국무총리비서실	9,546	9,499	△47	0.5
- 조세심판원	12,243	12,465	222	1.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기본경비

□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42억 4,7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200백만원(0.1%) 증가함.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50억 2,2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대비 1억 8,700만원(3.9%)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세심판원 서울사무소 상용근로자 신규채용 등에 기인한 것임.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92억 2,5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7,500만원(△1.9%) 감소하였으며, 이는 그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 편성되어온 특수활동비(1억 7,200만원) 예산이 “공직 복무 관리” 사업비로 이관된 것 등에 기인한 것임.

〈2026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14,235	14,247	12	0.1
○ 기본경비(총액)	4,835	5,022	187	3.9
- 국무조정실	2,950	3,012	62	2.1
- 국무총리비서실	1,170	1,233	63	5.4
- 조세심판원	715	777	62	8.7
○ 기본경비	9,400	9,225	△175	1.9
- 국무조정실	6,525	6,209	△316	△4.8
- 국무총리비서실	1,435	1,456	21	1.5
- 조세심판원	1,440	1,560	120	8.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주요사업비

□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540억 3,6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24억 5,700만원(4.8%)이 증가함.

○ 주요사업비가 2025년도 예산 대비 증가한 것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격년 주기로 시행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 예산 반영 등을 위해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이 2025년 예산 대비 23억 2,000만원 증가하였고, 국정과제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이 2025년 예산 대비 16억 2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함.

〈2026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51,579	54,036	2,457	4.8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97	197	-	-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1,346	1,295	△51	△3.8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845	3,204	359	12.6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1,242	1,200	△42	△3.4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	139	139	-	-
공공기관 갈등관리	350	340	△10	△2.9
숙의공론화기구 운영	-	3,635	3,635	순증
대테러센터 운영	710	794	84	11.8
인권보호관 지원	410	273	△137	△33.4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537	87	△450	△83.8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989	2,830	841	42.3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2,528	899	△1,629	△64.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3,795	-	△3,795	순감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96	79	△17	△17.7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5,396	2,649	△2,747	△50.9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107	98	△9	△8.4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144	146	2	1.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3,460	3,918	458	13.2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7,034	9,354	2,320	33.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5,049	6,564	1,515	30.0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442	411	△31	△7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628	2,230	1,602	255.1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33	32	△1	△3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1,958	2,558	600	30.6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167	117	△50	△29.9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1,153	999	△154	△13.4
내부 정보화(정보화)	2,472	3,055	583	23.6
공직복무 관리	954	1,129	175	18.3
국무총리 공관관리	400	401	1	0.3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400	1,550	150	10.7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303	303	-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7	713	6	0.8
광복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1,949	486	△1,463	△75.1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70	1,191	621	108.9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852	822	△30	△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	217	338	121	55.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는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9,700만원이 편성됨.
- ‘국정운영 정보화’는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을 실시간 처리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5,100만원(△3.8%) 감액된 12억 9,500만원이 편성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은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3억 5,900만원(12.6%) 증액된 32억 400만원이 편성됨.
- ‘전자통합평가 정보화’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4,200만원(△3.4%) 감액된 12억원이 편성됨
-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은 정책 현장에서 정부와 국민이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현장방문형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3,900만원이 편성됨.

- ‘공공기관 갈등관리’는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민간분야 지원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000만원($\Delta 2.9\%$) 감액된 3억 4,000만원이 편성됨
- ‘숙의공론화기구 운영’은 공공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및 사회적 논의 과제에 대한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6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대테러센터 운영’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24시간 상황관리 및 사건 대응, 테러 대상시설·이용수단 관리, 교육·홍보·실전 훈련을 통한 대테러 대응 역량 강화 등 범국가적 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8,400만원(11.8%) 증액된 7억 9,400만원이 편성됨.
- ‘인권보호관 지원’은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3,700만원($\Delta 33.4\%$) 감액된 2억 7,300만원이 편성됨.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정책 조정·수립, 계절관리제 실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및 국민건강 보호 방안 시행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4억 5,000만원($\Delta 83.8\%$) 감액된 8,700만원이 편성됨.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8억 4,100만원(42.3%) 증액된 28억 3,000만원이 편성됨.
- ‘규제개혁 정보화’는 규제 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정보시스템(내부)과 규제정보포털·규제개혁신문고(외부)를 구축·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6억 2,900만원(△64.4%) 감액된 8억 9,900만원이 편성됨.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은 추진단 활동 종료에 따라 사업이 종료됨.
-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사업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700만원(△17.7%) 감액된 7,900만원이 편성됨.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 전략·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ODA를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7억 4,700만원(△50.9%) 감액된 26억 4,900만원이 편성됨.
-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과 세월호 피해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900만원 (△8.4%) 감액된 9,800만원이 편성됨.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은 새만금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새만금위원회 운영과 새만금사업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00만원 (1.4%) 증액된 1억 4,600만원이 편성됨.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의 제도나 경험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수 교육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4억 5,800만원(13.2%) 증액된 39억 1,800만원이 편성됨.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은 부처별로 산재된 청년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의 참여를 통한 청년 정책 개선·보완으로 청년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3억 2,000만원(33.0%) 증액된 93억 5,400만원이 편성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은 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소외계층·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5억 1,500만원 (30.0%)이 증액된 65억 6,400만원이 편성됨.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관련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3,100만원 (△7.0%)이 감액된 4억 1,100만원이 편성됨.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은 지속가능발전 위상 제고·추진체계 강화 등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정책 연구·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6억 200만원 (255.1%)이 증액된 22억 3,000만원이 편성됨.
-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은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장기의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3.0%)이 감액된 3,200만원이 편성됨.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은 중앙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원(30.6%)이 증액된 25억 5,800만원이 편성됨.
-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는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시 납세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5,000만원(△29.9%)이 감액된 1억 1,700만원이 편성됨.
-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는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능력 있고 출신하는 총리실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5,400만원(△13.4%) 감액된 9억 9,900만원이 편성됨.
- ‘내부 정보화’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내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보서비스 제공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5억 8,300만원(23.6%) 증액된 30억 5,500만원이 편성됨.
- ‘공직복무관리’는 공직비위 상시점검을 통한 공직사회 기강확립, 부조리 예방 및 제도개선, 우수공무원 발굴·포상을 통한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7,500만원(18.3%) 증액된 11억 2,900만원이 편성됨.

- ‘국무총리 공관관리’는 공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적절한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0.3%) 증액된 4억 100만원이 편성됨.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은 국무총리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5,000만원(10.7%) 증액된 15억 5,000만원이 편성됨.
- ‘조세심판 정보화’는 조세검색서비스 제공 및 사건접수, 배정, 발송, 통계작성 등 내부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300만원이 편성됨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은 부패사각지대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예방을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등 기존 반부패 기구의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600만원 (0.8%) 증액된 7억 1,300만원이 편성됨.
- ‘광복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4억 6,300만원(△75.1%)이 감액된 4억 8,600 만원이 편성됨

-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는 뉴미디어 채널 운영을 통해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 2,100만원 (108.9%) 증액된 11억 9,100만원이 편성됨.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는 국회·정당 및 시민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3,000만원(△3.5%) 감액된 8억 2,200만원이 편성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2,100만원(55.8%) 증액된 3억 3,800만원이 편성됨.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0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31억 1,200만원(106.0%) 증액된 25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임.

〈20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세입예산	-	-	-	-
세출예산	12,74	25,486	13,112	106.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도 임무로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 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 성과를 제고한다’를 기관 임무로 설정하고,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1가지 전략목표(‘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를 설정하였음.
-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6	27
개수(개)	1	1	6	2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사업코드	비고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프로그램목표 I-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7000-7031	정보화 세부사업포함
	(2)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7000-7032	
	(3) 규제개혁	7000-7033	정보화 세부사업포함
	(4)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7000-7035	정보화 세부사업포함
	(5) 행정지원	7000-7036	
	(6)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7000-703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 성인지 예산¹⁾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1) 성인지 예산서 :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II. 검토의견

1. 조세심판원 기본경비²⁾: 법정처리기한 준수를 제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는 조세심판원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8.3%) 증가한 15억 6,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300	1,440	1,440	1,560	120	8.3

(자료: 조세심판원)

2) 검토의견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³⁾

□ 하지만, 조세심판원 청구사건의 연도별 평균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23년도 172일에서 2024년도 185일로 처리기간이 늘었고, 2025년도(9월 기준)에는 그 처리기간이 더욱 늘어 평균 226일로 나타남.

2)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또한, 법정처리기한(90일) 준수 사건 비율도 2023년 50%, 2024년 35.4%에서 2025년(9월 기준)에는 9.2%까지 큰 폭으로 낮아져 법정처리기한(90일) 미준수 사건 비율이 9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평균 처리 일수〉

(단위: 일, %)

구분	법정처리기한 (90일) 이내		91-180일		180일 초과		총건수	평균 처리일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3	8,244	50.0	2,857	17.3	5,384	32.7	16,485	172
2024	3,596	35.4	2,818	27.7	3,764	37.0	10,178	185
2025. 9.	477	9.2	1,989	38.6	2,691	52.2	5,157	226

(자료: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사건이 국제거래 증가 등 전문·복잡화되어 난이도가 높아진 반면 조직 및 인력은 적절히 강화되지 않아 신속한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2023년과 2024년의 경우에는 동일 쟁점 사건이 대량으로 접수된 반면, 2025년에는 동일 쟁점 대량접수 사건이 거의 없어 평균처리기간이 늘어났다는 설명임.
- 그러나, 2025년(9월 기준)의 법정처리기한 준수 비율(9.2%)은 작년(2024년)의 준수 비율(35.4%)과도 큰 차이가 있고, 2025년 9월 기준 조세심판원 인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2024년)에 비해 정원은 동일하나 현원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정처리기한(90일)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조세심판원 인력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원장	심판관	조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2023	정원	122	1	8	18	65	30
	현원	119	1	8	19	60	31
2024	정원	122	1	8	18	65	30
	현원	117	1	7	16	61	32
2025 (9월기준)	정원	122	1	8	19	64	30
	현원	122	1	7	17	65	32

(자료: 조세심판원)

□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조세심판의 경우 필수적 전치주의⁴⁾를 채택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사건처리 지연은 납세자 권리구제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정처리기한(90일) 준수율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4)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⁵⁾: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은 국가 주요시책,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의제에 대한 소통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숙의공론화 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공공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및 사회적 논의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6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이 사업은 ①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의제선정위원회 사업 1억 3,500만원, ② 공론화 과정의 진행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사업 35억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	-	-	3,635	3,635	순증
- 의제선정위원회	-	-	-	135	135	순증
- 공론화위원회	-	-	-	3,500	3,500	순증

(자료: 국무조정실)

5) 세부사업: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7032-302)

2) 검토의견

□ 국무조정실은 국가 주요시책과 국민적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사안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집단지성에 기반한 대안 형성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의 장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숙의공론을 활성화할 계획임.

○ 구체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⁶⁾(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국정과제, 주요 정책현안, 첨예한 갈등 사안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6)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⑤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 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 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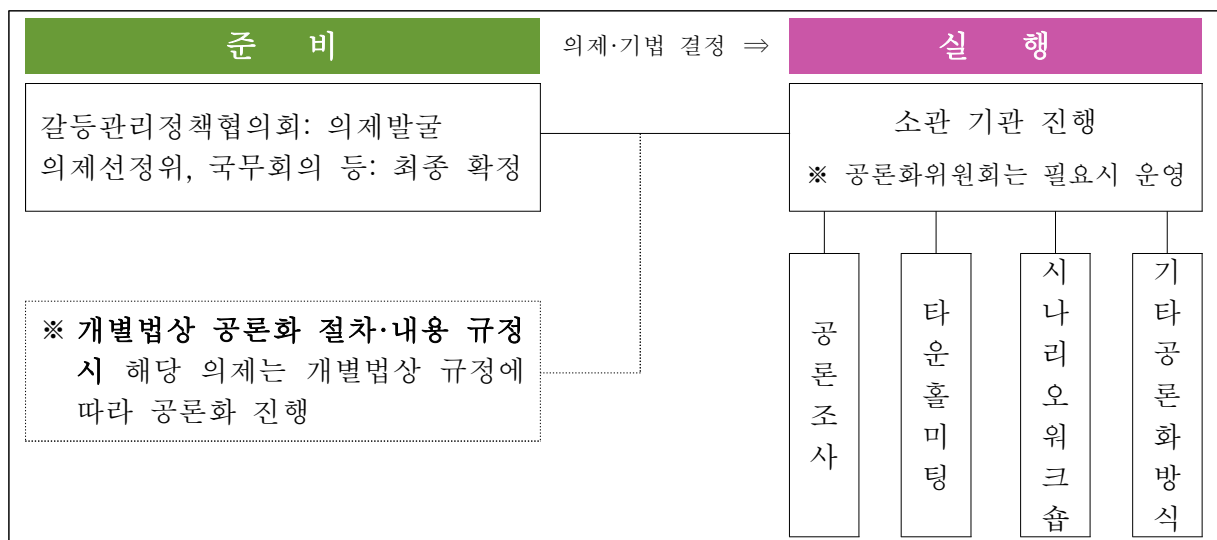
2. 공공갈등과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된다.

의제 후보를 발굴하고, 이후 국무회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또는 의제선정위원회(신설 예정)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의제와 추진 방식을 확정하며, 공론조사 등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및 지원단 등(신설 예정)을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임.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추진체계〉



(자료: 국무조정실)

□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의 예산안은 의제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시민참여단 등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 등 사례금, 사무실·회의장 등의 등의 공사 또는 임차 등의 조성 비용과 위원회 및 지원단 등의 운영경비, 숙의공론화 여론조사 및 토론회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용역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은 의제선정위원회의 경우 30명의 위원이 위원회 회의 12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10명의 위원이 5개월 동안 월 2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간담회의 경우 10명의 전문가와 5개월 동안 월 2회의 간담회를, 시민참여단의 경우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5개월 동안 월 1회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산출하였음.

〈2026년도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의제 선정 위원회 (135)	일반수용비 (210-01)	○ 참석수당: 200,000원×30명×12회=72,000천 원 ○ 안전검토수당: 100,000원×30명×12회=36,000천 원 ○ 회의자료 인쇄비: 12,000원×30부×12회=4,320천 원	112
	임차료 (210-07)	○ 회의장 임차: 1,000,000원×12회=12,000천 원	12
	사업추진비 (240-01)	○ 업무협의: 30,000원×30명×12회 = 10,800천 원	11
공론화 위원회 (3,500)	일반수용비 (210-01)	○ 참석수당: 290,000천 원 1. 공론화위원회: 200,000원×10명×2회×5월=20,000천 원 2. 전문가 자문 간담회: 200,000원×10명×2회×5월=20,000천 원 3. 시민참여단: 100,000원×500명×1회×5월=250,000천 원 ○ 안전검토수당: 20,000천 원 1. 공론화위원회: 100,000원×10명×2회×5월=10,000천 원 2. 전문가 자문 간담회: 100,000원×10명×2회×5월=10,000천 원 ○ 회의자료 인쇄비: 28,000천 원 1. 공론화위원회: 15,000원×10부×2회×5월=1,500천 원 2. 전문가 자문 간담회: 15,000원×10부×2회×5월=1,500천 원 3. 시민참여단: 10,000원×500부×1회×5월=25,000천 원 ○ 회의물품 구입비: 7,000천 원 1. 공론화위원회: 100,000원×2회×5월=1,000천 원 2. 전문가 자문 간담회: 100,000원×2회×5월=1,000천 원 3. 시민참여단: 1,000,000원×1회×5월=5,000천 원 ○ 지원단 사무용품: 6,000천 원 ○ 홍보비: 160,000천 원 ○ 단수조정: △300천 원	51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우편 및 택배요금: 6,750천 원 ○ 망이용료: 1,000,000원×2회선×5월=10,000천 원 ○ 전기요금: 500,000원×5월=2,500천 원 ○ 여행자보험: 10,000원×535명×6일=32,100천 원	51
	특근매식비 (210-05)	○ 지원단: 9,000원×15명×10일×5월=6,750천 원	7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임차료 (210-07)	○ 회의장 임차료: 125,000천원 1. 공론화위원회: 1,000,000원×2회×5월=10,000천원 2. 전문가 자문 간담회: 1,000,000원×2회×5월=10,000천원 3. 시민참여단: 7,000,000원×3시간×5회=105,000천원 ○ 사무실 임차료: 12,000,000원×5월=60,000천원 ○ 차량 임차료: 1,200,000원×5월=6,000천원 ○ 냉온수기 임차료: 50,000원×2대×5월=500천원 ○ 버스 임차료: 180,000천원 1. 1박2일 토론회: 4,000,000원×15대×1회=60,000천원 2. 1일 토론회: 2,000,000원×15대×4회=120,000천원 ○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80,000천원 1. 전산장비(PC, 모니터 등): 8,000,000원×5월=40,000천원 2. 사무가구(탁자, 의자 등): 8,000,000원×5월=40,000천원	452
	유류비 (210-08)	○ 차량 유류비: 500,000원×5월=2,500천원	3
	일반용역비 (210-14)	○ 공론조사 영상제작: 50,000,000원×1식=50,000천원 ○ 행사운영 1,840,000천원 1. 여론조사: 50,000원×20,000명=1,000,000천원 2. 1박2일 토론회: 240,000,000원×1회=240,000천원 3. 1일 토론회: 150,000,000원×4회=600,000천원 ○ 공론화 홈페이지 구축: 50,000,000원×1식=50,000천원 ○ 생방송 토론회: 150,000,000원×1회=150,000천원	2,090
	기타운영비 (210-16)	○ 과운영비: 90,000원×3과×5월=1,350천원	1
	국내여비 (220-01)	○ 업무협의, 현장방문 등: 87,000원×15명×12일×5월=78,300천원 ○ 단수조정: △2,470천원	76
	사업추진비 (240-01)	○ 공론화위원회: 30,000원×10명×2회×5월=3,000천원 ○ 전문가 자문 간담회: 30,000원×10명×2회×5월=3,000천원 ○ 시민참여단: 30,000원×500명×1회×5월=75,000천원 ○ 단수조정: 5,900천원	87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 위원회 대외 업무협의: 2,000,000원×5월=10,000천원 ○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 업무협의: 30,000원×30명×5월=4,500천원 ○ 단수조정: △500천원	14
	직책수행 경비 (250-02)	○ 고공단(나급) 단장: 650,000원×5월=3,250천원 ○ 2. 3급 갑: 500,000원×5월=2,500천원 ○ 3. 4급 갑: 350,000원×5월=1,750천원 ○ 4. 4급 을: 300,000원×5월=1,500천원	9
	정책연구비 (260-02)	○ 정책연구용역: 50,000,000원×1식=50,000천원	50
	공사비 (420-03)	○ 사무실 공사 및 철거공사비: 50,000,000원×1식=50,000천원	50
	무형자산 (440-00)	○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0,000원	100
합 계			3,635

(자료: 국무조정실)

- 이 사업은 숙의민주주의의 구현, 공공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 보장,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신뢰 조성 및 공공갈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2026년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의제선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계획, 지원단의 규모와 구성, 사무실·회의장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 운영 사업의 집행 규모를 참고하여 예산안을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신규사업 예산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거 유사사업 집행 규모만을 참고하여 산출하는 것은 예산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의 편성·집행방식은 예산의 낭비 또는 예산의 과도한 불용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⁷⁾

7) 참고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도 예산소요의 산출기초를 예산요구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하여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안 산출근거와 규모의 객관성·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에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의 경우에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예산소요 산출기초·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신고리 공론화 및 숙의공론화 예산액 비교〉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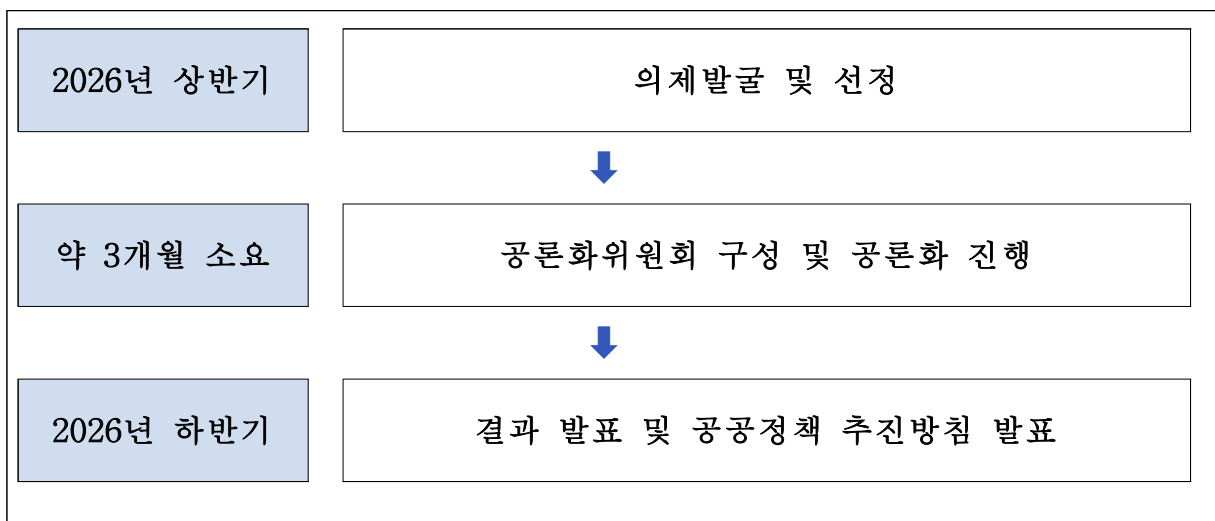
비목	내역	신고리공론화 집행액	숙의공론화 예산액
합 계		3,727	3,635
상용임금	행정실무원 인건비	17	-
일반수용비	소 계	666	623
	온·오프라인 공론화 홍보	384	160
	사례금	106	418
	회의자료 인쇄, 지원단 사무용품 등	105	45
	저작권료, 소송비, 번역료, 속기사이용료 등	71	-
공공요금	우편요금, 여행자보험, 사무실 운영요금 등	11	51
특근매식비	지원단 특근매식비	9	7
임차료	소 계	177	463
	지원단 사무실 임차	103	60
	전산장비·사무가구, 토론회 장소, 버스 임차 등	74	403
유류비	지원단 유류비	1	3
복리후생비	행정실무원 복리후생비	1	-
일반용역비	소 계	2,603	2,090
	시민참여형 조사	2,401	-
	숙의 공론화 공론조사 영상제작(50), 여론조사(1,000), 1박 2일 토론회(1회, 240), 1일 토론회(4회, 600)	-	1,890
	생방송 토론회 및 권역별 토론회	202	150
	공론화 홈페이지 구축	-	50
기타운영비	지원단 과운영비	1	1
국내여비	국내여비	11	76
사업추진비	사업추진비	32	98
관서업무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11	14
직책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14	9
일반연구비	홈페이지 구축	22	-
정책연구비	공론화 연구용역	-	50
고용부담금	4대보험 부담금	2	-
공사비	사무실 공사 및 철거비	-	50
무형자산	사무실 임차보증금	150	100

(자료: 국무조정실)

□ 둘째, 국무조정실은 이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소통 플랫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숙의 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의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2026년 상반기 공론화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숙의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후, 하반기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정책 추진방침을 확정할 예정임.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 로드맵(안)〉



(자료: 국무조정실)

- 이를 위해서는 의제선정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각 위원회 및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령에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⁸⁾

8) 참고로, 공론화 대상 의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론화 과정을 위하여 공론화 의제별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9530호, 2025. 4. 1.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이 2025년 4월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특히,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 사안을 의제로 다루는 기구인 만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공론화 과정이 단순한 여론수렴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인력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 비례성과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위원을 결격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사업이 단순한 행사성 사업 또는 홍보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속의 결과가 정책 결정과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인권보호관 지원⁹⁾: 대테러 인권보호관 업무 실적 강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¹⁰⁾에 따라 설치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3,700만원(△33.4%) 감액¹¹⁾된 2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인권보호관 지원	357	410	410	273	△137	△33.4

(자료: 국무조정실)

□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¹²⁾ 소속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¹³⁾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설치되었음.¹⁴⁾

9) 세부사업: 인권보호관 지원(7032-304)

1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주요 감액사유: 전문임기제 관련 기타직보수(약 8천만원) 예산이 ‘국무조정실 인건비(7001-100)’ 사업으로 이관되고, 공무원 퇴직금 예산이 감액(약 4천만원) 됨.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13)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함(「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 동법 시행령 제2조).

14)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임기 2년(연임 가능)의 비상임 위촉직이며, 2016년에 최초로 인권보호관이 위촉된

2) 검토의견

□ "대테러활동"이란 테러 관련 정보 수집¹⁵⁾,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함.¹⁶⁾

□ 이러한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는 ① 국가 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 안전 관련 자문 및 개선 권고, ②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③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 활동, ④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시정권고인데¹⁷⁾, 이를 위해 매년 2~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후, 현재 제5대 인권보호관이 재임 중임.

1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은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

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①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제9조(시정 권고) ① 인권보호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연도별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 집행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집행액	2023년 집행액	2024년 집행액	2025년 예산액
인권보호관 지원	324	263	352	373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주요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상정안건 관련 자문·개선권고는 총 16차례, 관계기관 대상 인권보호 교육은 총 86회 실시되었지만,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및 민원처리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인권보호관 업무 실적>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9.	합계
테러대책위 상정안건 관련 자문·개선권고	4	3	0	4	5	16
인권교육	18	28	14	16	10	86
시정 권고	0	0	0	0	0	0
민원 처리	0	0	0	0	0	0

(자료: 국무조정실)

□ 시정권고 및 민원처리 실적 부진과 관련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 실제로,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된 관계기관 안전 관련 자문·개선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총 9건의 자문·개선권고 중 5건이 ‘인권보호관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성’ 및 ‘인권보호관과의 사전 협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나,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인권보호관의 자문·개선권고 내용〉

연도	안전명	검토의견 요약
2024 (4건)	인권보호관 역할 강화 관련 의견	헌법상 자유권 침해 가능성 있는 대테러활동 전반에 대해 <u>인권보호관에 적시 정보 공유 필요</u>
	국내외 테러정세 및 테러위협 선제 대응 계획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예방 점검 활동 시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안전관리 강화	테러대상시설 지정 기준 개선 시 수인의무와 영업의 자유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	국외 경찰 파견, 관계기관의 부처 내 상황실 설치 관련 재외국민의 인권 및 기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u>인권보호관과 적시 정보 공유 필요</u>
2025. 9. (5건)	2025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대테러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법령 및 실무매뉴얼 개정 등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u>인권보호관의 사전참여 확대 필요</u>
	2025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UN 대테러사무국 및 고등인권판무관, 미국·EU 등과의 적극적 정보협력을 통해, 우리 인권보호 정책·조직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실질화 필요
	2025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대테러활동 중 포탈·SNS 게시물 검열 및 쇼핑물 거래 제한 등 행정조치 시 제한 대상·범위 등 결정에서 <u>인권보호관과의 사전협의·검토 요청</u>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	경호안전대책기구(설치근거: 대통령경호법 제5조의2)에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 보장방안 수립 권고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관계기관 소관 대테러 법령 및 관련지침 등 제·개정 시 <u>인권보호관과 사전 협력 요청</u>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주된 업무는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시정권고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방지 실적 없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상정안건 관련 권고 및 인권 교육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방안을 적극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활동 실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4. 규제개혁위원회 운영¹⁸⁾: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내역사업의 예산 증액규모 및 홍보 주제 검토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 억제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4,100만원(42.3%) 증가한 28억 3,000만원이 편성됨.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② 규제합리화회의 운영, ③ 국제협력, ④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의 총 4건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712	1,989	1,989	2,830	841	42.3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042	1,300	1,300	1,471	171	13.2
- 규제합리화회의 운영	416	218	218	378	160	73.4
- 국제협력	41	248	248	248	-	-
-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213	223	223	733	510	228.7

(자료: 국무조정실)

18) 세부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2) 검토의견

(1)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내역사업의 예산 증액규모 및 홍보 주제 검토 필요

-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내역사업은 규제혁신 성과 홍보를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억 2,300만원보다 5억 1,000만원(228.7%) 증가한 7억 3,300만원임.

<2026년도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A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213	223	733	510	228.7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국무조정실은 2026년도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사업과 관련하여,
- ① 계기별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위해 3억 3,300만원, ② 규제혁신 블로그 등 국민소통 채널 운영 및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2억 7,000만원, ③ 규제혁신 영상 콘텐츠 제작에 8,000만원, ④ 규제혁신 자체 유튜브 채널 운영에 5,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인데,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인지도 높은 광고매체를 활용해 규제혁신 성과를 광고하고, 서포터즈 활용, 블로그 및 유튜브 등 국민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려는 취지로 보임.

<2026년도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사업계획안>

- ① 계기별 규제혁신 사례 홍보: 3억 3,300만원(증 3억원)
- ② 규제혁신 블로그 등 국민소통 채널 운영 및 서포터즈 운영: 2억 7,000만원
(증 1억 6,000만원)
- ③ 규제혁신 영상 콘텐츠 제작: 8,000만원(전년 동)
- ④ 규제혁신 자체 유튜브 채널 운영: 5,000만원(신설)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소통이 필요하고, 규제혁신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내역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국민소통’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음.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목적 중 하나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규제의 정비’인데, 2024년도 홍보 콘텐츠를 살펴보면, 기존규제 정비 성과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신설·강화 규제심사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콘텐츠는 부족하였음.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시행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비하는 것보다 규제 신설·강화 전에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임.

만약, 국민소통을 위한 2026년도 홍보사업이 기존규제 정비 성과에만 치중하고 신설·강화 규제 관련 국민 의견수렴 등은 소홀히 한다면, 정책 성과 홍보 등 기관 이미지 홍보에만 집중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사업 수행 전에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사업의 홍보 주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적정 증액 규모에 대해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임.

규제혁신의 수혜대상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고, 그 수혜대상이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에 한정된다면 규제 소관 부처에서 그 대상을 특정해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사업은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면 될 것임.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각 부처의 규제혁신 홍보 콘텐츠가 수시로 포털을 통해 공유되고 있음.¹⁹⁾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증액규모(5억 1,000만원 증액, 228.7%)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임.²⁰⁾

□ 종합하면,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사업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하여, 이미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규제혁신

19) 참고로, 현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대상에 규제혁신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정부 부처는 규제혁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20)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포털의 홍보물은 개별 부처의 기존 콘텐츠를 포털에 반영하는 수준(미러링)으로, 국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전파력 등을 고려할 때 블로그, 유튜브 등 SNS 홍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수혜대상이 특정되는 경우 규제 소관 부처에서 직접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기존규제 정비 성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의견수렴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 보임.

〈규제정보포털을 통한 각 부처 규제혁신 사례 홍보 예시21〉

금융위원회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제도화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16일



- ✓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관련 **신규 인가단위 및 업무기준 도입**
 -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전용 인가단위 신설
 - 거래 및 체결, 공시, 전문종목 제도, 이해상충 방지 등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기준 마련
- ✓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 활성화 기대**
 -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기여 국외 창업기업, 투자규제 완화!

자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2024.11.11월 9일까지)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제도 개선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포장단위별 승인

내용물이 동일해도 **포장단위**가 바뀌면 형식승인 재신청

변경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

성능 기준 승인

재질·성분·크기 등 본질적 변경이 있을 때만 형식승인

비용절감

기업 부담완화

시간단축

비상시 대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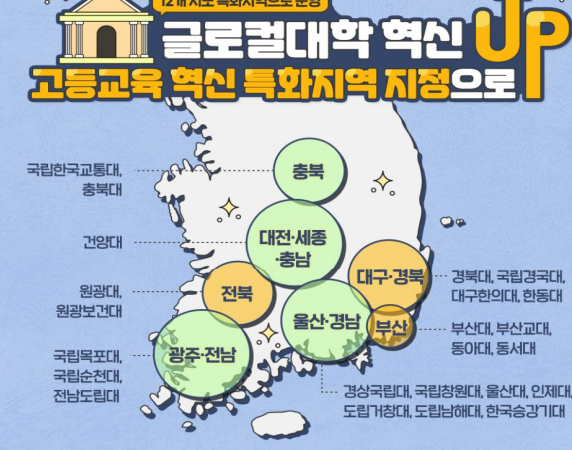
현장 효율성

다양한 포장단위 활용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교육부

12개 시도 특화지역으로 운영 글로벌대학 혁신 UP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으로



○ 신규지정: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내용을 새롭게 적용
○ 변경지정: 기존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규제특례 내용 등을 추가·변경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www.moe.go.kr

(2) 향후 성과지표(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 운용과정에서 그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²²⁾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의 정보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지출구조조정 등의 용도로 활용됨.

□ 국무조정실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는 프로그램 목표를 정하고, 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²³⁾ 중 하나로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을 설정하고 있음.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측정산식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 (단위: %)	목표	-	-	-	77	77 ²⁴⁾	(개선(부대) 또는 철회권고된 규제 수 / 중요규제 수) ×100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자료: 국무조정실)

22)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2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는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해, 총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는데, 다른 하나의 성과지표는 ‘청년위원 위촉비율’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합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I-1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①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	(개선(부대) 또는 철회권고된 규제 수 / 중요규제 수) × 100
② 청년위원 위촉비율(%)	청년위원 위촉 수 / 청년참여 관리대상 정부위 위촉위원 수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24) 최근 5개년(2020-2024) 평균 실적치인 73.3%보다 5% 이상 상향한 77.0%을 2026년도 목표치로 설정함.

□ 그런데, 동 지표의 측정산식을 보면, 중요규제심사 건수만을 대상으로 개선·철회권고 실적을 산출하고 있는데, 전체 규제심사 건수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중요규제심사 건수만을 모수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그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중앙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부처 자체심사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야 함.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규제 내용의 적정성을 고려해 그 심사대상을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로 구분하는데, 파급효과가 적고 적정성이 인정되는 비중요규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심사 요청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원안 동의)함.²⁵⁾

한편, 중요규제 판단의 구체적 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하고 있음²⁶⁾.

25)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그런데, 연도별 규제심사 현황을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은 2016년 신설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전체 심사대상 규제 중 중요규제 비율과 관련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치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치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규제정책 방향과 규제의 파급효과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으로 보임.²⁷⁾

<2018년-2024년 연도별 규제심사 현황>

(단위: 건, %)

연도	심사규제 합계	비중요규제 (비율)		중요규제 (비율)		원안동의 (비율)		개선철회권고 (비율)	
2018	1,083	1,029	(95.0)	54	(5.0)	25	(46.3)	29	(53.7)
2019	974	952	(97.7)	22	(2.3)	8	(36.4)	14	(63.6)
2020	1,515	1,460	(96.4)	55	(3.6)	23	(41.8)	32	(58.2)
2021	1,129	1,082	(95.8)	47	(4.2)	15	(31.9)	32	(68.1)
소계	4,701	4,523	(96.2)	178	(3.8)	71	(39.9)	107	(60.1)
2022	819	748	(91.3)	71	(8.7)	17	(23.9)	54	(76.1)
2023	612	532	(86.9)	80	(13.1)	15	(18.8)	65	(81.3)
2024	842	727	(86.3)	115	(13.7)	20	(17.4)	95	(82.6)
소계	2,828	2,489	(88.0)	339	(12.0)	61	(18.0)	278	(82.0)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26)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2016년 신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에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27) 반면, 국무조정실은 2022년 이후 중요규제 비율이 증가한 이유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가 2022년부터 중요규제 판단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중요규제 심사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2026년도 성과계획서(총괄)」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지표로 설정되어야 함.

□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설정한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은 전체 심사 대상 규제가 아닌 중요규제만을 대상으로 개선·철회 권고율을 산정하고 있고, 규제의 파급효과나 적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중요규제 해당 건수가 극히 적어져 통계로서의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와 성과목표 달성도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어 보임.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라는 국회²⁸⁾와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전 지표인 ‘규제개혁 만족도’를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로 변경하여 2025년도 성과관리에 처음 적용하였으므로, 그 시행 내용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 국무조정실은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성과지표 운영과정에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와 성과목표 달성도 사이의 괴리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임.

28) 2022년도 결산 관련 국회 시정요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프로그램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²⁹⁾: 종합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앞당길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 체계적·실효적인 ODA 전략·정책 마련 및 유·무상 연계 등 사업 심사·조정, 유·무상 및 양·다자 사업 연계, 평가 등을 통해 ODA 통합·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4,700만원(△50.9%) 감소³⁰⁾한 26억 4,900만원이 편성됨.

<2026회계연도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788	5,396	5,396	2,649	△2,747	△50.9

(자료: 국무조정실)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됨.

①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정책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고, ② 기획재정

29) 세부사업: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7035-306)

30) 예산 감액의 주요 원인은 ‘ODA 통합정보포털 고도화’ 사업 완료, 정책연구비 감액 등에 따른 것임.

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이며, ③ ODA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은 ‘시행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주요기관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민간전문가 및 범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인데,³¹⁾ 2025년 10월 기준, 총 29명(위원장 1명, 정부·관계기관³²⁾ 위원 16명, 민간위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5년 단위) 및 종합시행계획(매년),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평가 및 점검 등 ODA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³³⁾

연도별 ODA사업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매년 수립되는 종합시행계획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 시에 이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함.

3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32) “관계기관”이란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국제협력단을 말한다.

3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5년 8월에 총 39개 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 7개 포함)의 ODA사업과 관련된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을 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6조 5,010억원 대비 1,423억원(△2.1%) 감소한 총 6조 3,587억원임.³⁴⁾

〈연도별 ODA사업 예산〉

(단위: 십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요구액)
총ODA(십억원)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6,501.0	6,358.7
양자간원조 비중(%)	2,775.0 (81.0)	2,926.1 (77.9)	3,115.7 (79.1)	3,673.9 (76.9)	5,128.2 (81.9)	5,445.1 (83.8)	5,209.3 (81.9)
유상원조 비중(%)	1,184.9 (42.7)	1,258.2 (43.0)	1,230.5 (39.5)	1,503.0 (40.9)	2,032.0 (39.6)	2,150.0 (39.5)	2,020.3 (38.8)
무상원조 비중(%)	1,590.1 (57.3)	1,667.9 (57.0)	1,885.2 (60.5)	2,170.9 (59.1)	3,096.2 (60.4)	3,295.1 (60.5)	3,189.0 (61.2)
다자간원조 비중(%)	651.9 (19.0)	828.2 (22.1)	822.6 (20.9)	1,103.2 (23.1)	1,134.7 (18.1)	1,055.9 (16.2)	1,149.3 (18.1)

(자료: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2026년도 초에 확정된 예산에 맞추어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의결하고, 2026년도 ODA 사업을 시행하게 됨.

34) 제5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5. 8.) 의결안건(제54-1호),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 검토의견

(1)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점을 앞당길 필요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는데, 40여 개에 이르는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ODA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ODA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음.³⁵⁾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5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종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³⁶⁾ 이렇게 설정된 로드맵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ODA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정책의 기본방향, ODA 규모 및 운용계획, 지역별·주요분야별 추진방향,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맞추어 매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35) 「국제개발협력법안(1801698) 검토보고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9. 4., P.14-15

3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때에는 이 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함.³⁷⁾

□ 이와 같은 절차를 고려할 때,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ODA 예산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 시행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제4차 기본계획(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2026년 시행계획(요구액 기준)만 의결된 상태임.

3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 지역별·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8.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단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본방향
9.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즉,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 시행계획(요구액 기준)이 의결되었고, 이 계획에 맞추어 2026년도 ODA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된 것임.

- 이전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의결 시점을 확인해보면, 그 의결 시점이 점차 늦어져 적용 개시 연도 초에나 의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기본계획 역시 내년(2026년) 초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임.

〈5년단위 기본계획 의결 현황〉

구 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대상기간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의결시점	2010. 12.	2015. 11.	2021. 1.	2026. 2. 예정

(자료: 'ODA KOREA 홈페이지-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 의결일자 재구성)

-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매년 시행되는 종합시행계획의 근거가 되며, 국가 ODA 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수행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25년 2월 의결한 ‘한국 ODA 발전방안’³⁸⁾을 보면, 그 주요과제³⁹⁾ 중 하나로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를 제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분야별·지역별

38)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52-2호), 「한국 ODA 발전방안」, 2025. 2. 20.

39) ①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② ODA 효과성 제고, ③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④ 국민과 함께하는 ODA

전략을 상호 연동하여 전략체계의 완성도를 향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4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맞추어 연도별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져, 기본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면, 국가 ODA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연동해 통합적 ODA 사업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과도 상충하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그 수립 시점을 앞당겨 예산안 국회 심사 전에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 ODA 사업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대형화 노력 제고 필요

□ 2026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요구액 기준)의 기관별 ODA 사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총 39개 기관이 1,8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6조 343억원⁴⁰⁾으로서, 사업당 평균 소요 예산액은 33.2억원으로 나타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고, 동 위원회가 2025년 2월 의결한 ‘한국 ODA 발전방안’⁴¹⁾에서도 사업 대형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참고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ODA 예산안 편성 시에 연수 사업들이 개별 시행기관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절성 문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부처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소규모 연수사업들을 외교부 소관 예산으로 이관하여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⁴²⁾

□ 그러나, 여전히 총 39개 시행기관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5개 시행기관의 사업예산(총 ODA 예산의 91.7%)을 제외하면, 나머지 34개 시행기관의 사업 당 평균예산

40) 2026년도 ODA 예산안 요구액 6조 3,587억원 중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등(3,243.8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41)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52-2호), 「한국 ODA 발전방안」, 2025. 2. 20.

42) 외교부 소관 ‘글로벌연수’ 사업 내에 ‘부처연수지원(N-1)’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안 30억원을 편성함.

액은 10.8억원에 불과해 소규모 사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2026년도 기관별 ODA 사업예산 규모〉

(단위: 억원, 개)

구 분		예산안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당 평균예산
총 39개 기관 합계		60,343.2	100%	1,820	100%	33.2
5 개 시 행 기 관	합 계	55,341.5	91.7%	1,359	74.7%	40.7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포함)	24,709.9	40.9%	294	16.2%	84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포함)	25,762.4	42.7%	856	47.0%	30.1
	농림축산식품부	2,161.2	3.6%	49	2.7%	44.1
	교육부 (교육청 포함)	1,639.2	2.7%	104	5.7%	15.8
	보건복지부	1,068.8	1.8%	56	3.1%	19.1
34개 시행기관		5,001.7	8.3%	461	25.3%	10.8

(자료: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P.38 재구성)

□ 실제로, 2026년도 ODA사업을 계획 중인 시행기관 39개 중 사업당 평균예산안 10억원 미만 기관의 비율이 56.4%(22개)로 나타나는데, 이 비율은 2024년도(63.8%) 보다는 줄었지만, 2025년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음.

〈총 시행기관 대비 사업당 평균예산 10억원 미만 기관 수〉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시행기관 수	47개	41개	39개
사업당 평균예산 10억원 미만 기관 수	30개(63.8%)	23개(56.1%)	22개(56.4%)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자료를 기초로 작성)

- 국무조정실은 양적으로 확대된 ODA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없도록 개별 ODA 사업을 대형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과성 및 가시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임.

6.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⁴³⁾: 기후시민회의 논의 결과 환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억 1,500만원(30.0%)이 증가한 65억 6,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4,719	5,049	5,049	6,564	1,515	30.0
- 위원회 운영	2,465	2,611	2,611	4,826	2,215	84.8
- 사무처 운영	2,254	2,438	2,438	1,738	△700	△28.7

(자료: 국무조정실)

○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될 예정이며, 동 사업의 명칭도 위 시행시기에 맞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으로 변경될 예정임.

43) 세부사업: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7035-319)

2) 검토의견

□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는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⁴⁴⁾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고 규정⁴⁵⁾함으로써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법률 상 목표로 설정하였음.

○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중장기 감축목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감축목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원칙⁴⁶⁾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⁴⁷⁾을 한 바 있음⁴⁸⁾.

□ 국무조정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입법화하기 위한 공론화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4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46)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7) 다만, 2026. 2. 28.을 시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

48) 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0헌마389, 2021헌마1264(병합), 2022헌마854(병합), 2023헌마846(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확인]

반영하고, 2050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후시민회의 운영 관련 예산 18억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⁴⁹⁾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 공정전환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책에 담아내는 국민 참여 방안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온실가스 장기 감축경로(2031년~2049년)의 입법이 예정되어 있고, 후속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후시민회의 운영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 구체적인 예산안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기후시민회의 운영 및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13억 5,000만원, 온라인 숙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기후시민회의의 운영 관련 예산안 산출 내역〉

구분	세부내용	예산안(백만원)	산출내역
기후시민회의 운영	· 기후시민회의 모집 및 구성(500명) · 국민대토론회 등	1,250	· 기후시민회의 운영 7억원 · 국민대토론회 및 영상백서 작성 등 5.5억원
대국민 의견수렴	· 패널추출·조사 등 (10,000명)	100	· 패널조사 기획·사례비 등 8,000만원 · 결과분석 2,000만원
온라인 숙의시스템	· 이러닝 학습 및 통계	450	· 개인별 이수 현황 등 통계 관리 시스템 3억원 · 웹 및 모바일 디자인 0.5억원 · 이러닝 학습 영상 코딩 등 기타 1억원
합계		1,800	

(자료: 국무조정실)

49) 2025년도까지는 의견수렴을 위한 예산 1억원이 반영되어있었음.

□ 국무조정실은 기후시민회의를 직업·연령·지역·성별 대표성을 가진 일반국민 약 500명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기후시민회의에서 직접 논의의제를 선정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숙의·토론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공론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기후시민회의의 논의 결과가 단순히 의견 수렴 및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시민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한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2025년 8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⁵⁰⁾된 바 있으나, 소관 위원회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⁵¹⁾의 논의과정에서 환경부는 기후시민회의 등 국가기후 거버넌스와 관련한 정부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50) [221253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51) 제429회 정기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2025년9월22일) 회의록

○환경부차관 금한승 ... 기후시민회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국가기후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 갈지 이런 것들을 정부 내부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은 기후시민회의와 관련한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로 대안반영폐기⁵²⁾되었음.

□ 기후시민회의에서 숙의·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가 체계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전달되고, 실제 탄소중립 정책 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⁵³⁾하고 있음.

○ 위원회는 소속 조직으로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⁵⁴⁾, 일반 국

52) 해당 법률안에 포함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 변경(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의 내용은 대안에 반영되었고, 해당 대안은 2025. 10. 26.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2026. 1. 2.에 시행될 예정임.

5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이하 각호 생략)

5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의 논의를 위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소속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부재한 상황임.

- 참고로,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 중에 기후시민회의와 유사하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회의체의 설치 근거를 둔 사례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⁵⁵⁾가 있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도출된 공론 결과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 국회의 입법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5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이하 생략>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2.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7.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⁵⁶⁾: 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포털을 운영하여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200만원(255.1%) 증가한 22억 3,000만원이 편성됨.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구센터 지정·운영사업은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국제동향 조사·연구, 지속가능성 평가 수행 등 전문적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억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591	628	628	2,230	1,602	255.1
- 연구센터 지정·운영	-	-	-	1,500	1,500	순증

(자료: 국무조정실)

56) 세부사업: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 2022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7월에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에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⁵⁷⁾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⁸⁾

○ 국가위원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UN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원회 설치 권고(1992년 리우회의)와 국내 시민사회·언론·학계·경제계 등의 요구에 따라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⁵⁹⁾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후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그 명칭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⁶⁰⁾되었음.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음.

5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5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59)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6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8612호, 2007. 8. 3., 제정)

제15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동 법률체계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⁶¹⁾이 되었고, 종전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음.⁶²⁾

○ 이후, 경제·환경·사회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하여 포괄적인 상위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⁶³⁾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위원회는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었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추진 연혁〉

근거	소속(소관)	기수	인원	기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대통령 (환경부)	1기	33명	2000. 9. ~ 2002. 9.
		2기	34명	2002. 10. ~ 2003. 6.
		3기	76명	2003. 12. ~ 2005. 12.
		4기	32명	2006. 5. ~ 2008.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대통령 (환경부)	5기	30명	2008. 5. ~ 2009. 4.
지속가능발전법	환경부장관 (환경부)	6기	24명	2010. 9. ~ 2012. 9.
		7기	34명	2012. 11. ~ 2014. 11.
		8기	32명	2015. 9. ~ 2017. 8.
		9기	33명	2018. 8. ~ 2020. 8.
		10기	32명	2020. 12 ~ 2022. 1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대통령 (국무조정실)	11기	55명	2024. 10 ~ 2026. 9.

(자료: 국무조정실)

61) 「녹색성장법」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후변화대응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62)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6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2021.12., 의안번호 2113765) 제안이유

2) 검토의견

□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되었음(제27조⁶⁴⁾).

○ 그런데, 제정법 시행(2022. 7. 5.) 이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그 동안 연구센터 지정·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4년 10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11월 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의 지정·운영을 위한 예산을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2026년도에 센터장(1명)과 2개의 팀(전략·평가팀 4명, 국제·정보팀 4명)으로 구성되는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자료 분석·검토, 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임.

6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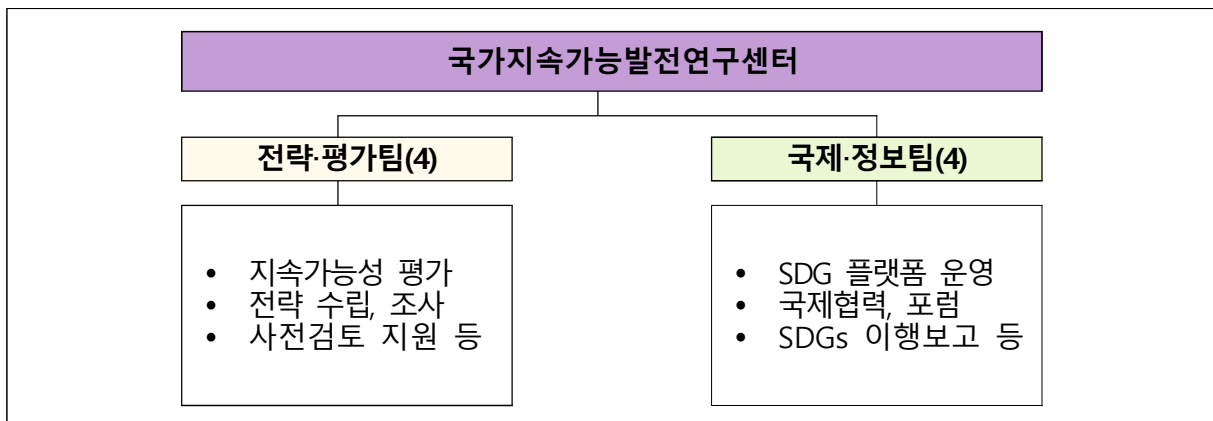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향후 연구센터가 국가위원회, 추진단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 DB 구축, 영향분석 연구, 사전 검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지속가능발전 싱크탱크로서 기능하며, ‘목표 설정→지표 설정→평가→공개→환류’ 평가 프로세스 가동을 통하여 지속가능 전환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데이터를 일관적·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업 예산안을 신규 편성하였음.

〈연구센터 조직도(안)〉



(자료: 국무조정실)

- 한편, 이 사업은 15억원이 전액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되었는데, ① 연구원 인건비 6억 6,000만원, ② 사무실 임차료·기자재 2억 500만원, ③ 정보망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억원, ④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등 2억원, ⑤ 경상여비 2억 3,500만원 등의 세부내역으로 구성됨.

〈2026년도 연구센터 지정·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민간 위탁 사업비 (320-02)	인건비	○ 연구원 인건비: 정부출연연 연평균 임금 8,798만원×5명 + 연구원 5,500만원×4명 = 660백만원	660
	사무실 임차료 및 기자재	○ 사무실 임차보증금(30백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68백만원), 공사비(50백만원) 등 148백만원 ○ 책상·의자·집기(29백만원), PC·모니터·SW·네트워크 구입(28백만원)	205
	정보망 고도화 ISP 수립	○ 빅데이터 기반 분석, 민관 소통협력 및 온라인 공론화 기능 등 ISP 수립(200백만원)	200
	지속가능 발전 관련 조사·연구 등	○ 2026 국가지속가능성 평가(100백만원) ○ SDG 민간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100백만원)	200
	경상경비, 여비, 일반관리비 등	○ 공공요금·운영경비(60백만원), 회의수당 등 회의비(45백만원), 일반관리비(85백만원) ○ 국내여비(29백만원), 국외여비(16백만원)	235
합 계			1,500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및 DB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민간위탁
사업비(320-02목)를 집행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함.⁶⁵⁾

- 이에 국무조정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진행한 후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사·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등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연구센터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상 지정기간을 1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센터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성과 축적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가 주요 업무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사 입법⁶⁶⁾을 참고하여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0.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10-3. 세부지침

가. 사업자 선정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소관 부처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한다.

66)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지정기간) ① 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무조정실장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둘째,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2026년 1월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2월에는 운영규정 마련, 연구센터 연구원 채용 및 조직의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나, 연구센터 공모절차나 인력채용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이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2026년도 연구원 인건비는 정부 출연연 연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2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연구센터 공모 및 인력 채용 지연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거나 연구원에게 과도한 인건비가 지급될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8.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⁶⁷⁾: K-토론나라 참석수당 일부 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은 홈페이지·SNS 등을 활용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 등에 대한 온라인 소통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2,100만원(108.9%) 증가한 11억 9,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42	570	570	1,191	621	108.9
- 채널운영 및 콘텐츠 개발	474	502	502	492	△10	△1.9
-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강화	39	39	39	39	-	-
-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29	29	29	29	-	-
- K-토론나라 운영	-	-	-	631	631	순증

(자료: 국무총리비서실)

2) 검토의견

-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여 정책과 연계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K-토론나라 운영’ 관련 예산 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음.

67) 세부사업: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7037-301)

- K-토론나라 운영을 위한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2억 7,500만원, 일반용역비 3억 2,000만원,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비 3,6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일반수용비는 K-토론나라에 참여하는 패널 및 사회자·석학 등 저
명인사에 대한 사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용역비는
K-토론나라의 홍보를 위해 사전·사후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련 장
비와 시설을 임차하기 위한 것임.

〈K-토론나라 운영 관련 예산안 산출 내역〉

구분	예산안 (백만원)	산출내역
일반수용비 (210-01)	275	· 콘텐츠 유통 : 500,000원×3편×26회=39,000천원 · 토론회 참석수당 : 200,000원×15명×26회=78,000천원 · 사회자, 석학 등 저명인사 사례 : 3,000,000원×2명×26회=156,000천원 · 관련 도서구입 : 200,000원×12월=2,400천원
일반용역비 (210-14)	320	· 운영경비 : 4,996,154×26회=129,900천원 · 사전 및 사후 콘텐츠 제작비 : 98,800천원 - 룻폼 영상 : 1,500,000원×2편×26회=78,000천원 - 숏폼 영상 : 300,000원×1편×26회=7,800천원 - SNS 홍보 : 500,000원×26회=13,000천원 · 장소 및 시설 임차 : 91,000천원 - 장소 임차 : 5,000,000원×13회=65,000천원 - 시설 및 장비 임차 : 1,000,000원×26회=26,000천원
국내여비 (220-01)	23	· 87,000×10명×26회=22,620천원 · 단수조정 : +380,000원=380천원
사업추진비 (240-01)	13	· 유관기관 업무협약 : 25,000원×10명×26회=6,500천원 · 전문가 의견 수렴 : 25,000원×10명×26회=6,500천원
합계	631	

(자료: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총리비서실이 예산안 편성 이후 제시한 구체적인 2026년 K-토론나라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1년간 정기적으로 격주 개최(약 26회)를 목표로 청년과의 토론, 명사 인터뷰 포맷을 번갈아가면서 운영할 계획임.

○ 참고로, 2025년 제1회 K-토론나라는 10대부터 30대까지 25명 내외의 청년을 초청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회 K-토론나라는 명사를 초청하여 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⁶⁸⁾되었음.

○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를 통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 및 정책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미래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26년도 K-토론나라 운영 예산안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마련되기 전 편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패널 참석수당 및 명사 등에 대한 사례금이 계획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보면, 국무총리비서실은 패널 참석수당으로 7,800만원, 저명인사에 대한 사례금으로 1억 5,600만원 등 참석 수당 관련 예산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6년에 각각 26회씩 운영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68) 2025. 10.말 기준, K-토론나라는 총 4회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5년의 경우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를 활용하여 운영하였음.

- 다만, 국무총리비서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토론나라 운영 방식을 격주로 개최(연간 26회)하되, 패널이 참석하는 청년과의 토론 포맷과 명사에 대한 인터뷰 포맷을 번갈아가면서 개최(각각 13회)할 계획이므로, 각 13회 분량의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석 수당 관련 예산 2억 3,4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1억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K-토론나라 참석수당 관련 조정 내역(안)〉

구분	예산안	조정안
패널 참석수당	7,800만원 (200,000원×15명× <u>26회</u>)	3,900만원 (200,000원×15명× <u>13회</u>)
사회자, 석학 등 저명인사 사례	1억 5,600만원 (3,000,000원×2명× <u>26회</u>)	7,800만원 (3,000,000원×2명× <u>13회</u>)
합계	2억 3,400만원	1억 1,700만원

감액 조정: △ 1억 1,700만원

(자료: 국무총리비서실)

9.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⁶⁹⁾: 시민통통 플랫폼 지속 운영 여부 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회 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은 국무총리의 국회·정당과의 원활한 소통 활동을 보좌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교류·소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00만원 (△3.5%) 감액된 8억 2,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국회 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회 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883	852	852	822	△30	△3.5
- 당정협의체 운영	83	65	65	65	-	-
- 국회·정당 업무협의	23	23	23	23	-	-
-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지원	226	230	230	230	-	-
-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65	-	-	-	-	-
- 시민사회활성화지원	-	149	149	149	-	-
- 시민사회소통 및 국정 현안 의견수렴	327	277	277	247	△30	△10.8
- 특정업무경비	108	108	108	108	-	-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운영	50	-	-	-	-	-

(자료: 국무총리비서실)

69) 세부사업: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7037-302)

2) 검토의견

□ 동 사업의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내역사업은 주요 사회현안 및 갈등현안에 대한 시민단체 간담회·업무협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시민통통)운영, 국정과제 집행현장 청문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된 2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에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정책 및 제도개선 등 아이디어를 수집하며,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시민통통)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용역비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시민사회소통 및 국정 현안 의견수렴	327	247	△30	△10.8
(일반수용비)	64	64		
(관리용역비)	80	80		
(국내여비)	12	12		
(사업추진비)	91	91		
(일반연구비)	30	-	△30	△100

(자료: 국무총리비서실)

○ 시민통통 플랫폼은 2020년말에 신설된 이후, 2023년에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였음. 플랫폼의 주요 구성으로는 각종 이슈에 대한 전문가·시민의 의견 및 정책 제안을 공유하는 ‘시민기고’, ‘아이디어 공모’, 법령·통계·정책자료 등을 제공하는 ‘지식교육DB’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시민통통 플랫폼의 접속자 수 및 콘텐츠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에 접속자 수 및 콘텐츠 이용 건수 모두 종전 대비 급감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 상시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 운영이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플랫폼 접속자 수를 살펴보면, 플랫폼이 개편된 2023년의 경우 월 평균 약 4,700명 수준이었으나, 2025년의 경우 월 평균 1,000명 이하가 플랫폼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남.

〈시민통통 플랫폼 월별 접속자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
1월	579	3,648	627	978
2월	545	3,572	467	1,178
3월	703	4,096	675	1,053
4월	767	6,077	692	1,009
5월	1,063	7,448	714	792
6월	832	8,067	580	830
7월	833	7,773	765	852
8월	886	6,761	609	806
9월	1,190	5,999	763	839
10월	3,797	1,649	2,426	-
11월	5,087	1,148	3,811	-
12월	3,940	606	1,845	-
합계	20,222	56,844	13,974	8,337
월평균	1,685	4,740	1,164	926

(자료: 국무조정실)

- 다음으로, 콘텐츠 별 접속자 현황을 보더라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콘텐츠 접속자 수가 매우 저조하며, 특히 2025년의 경우 2024년 대비 접속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시민통통 플랫폼 콘텐츠별 접속자 현황〉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2023년	2024년	2025년
시민기고			-	3,932	3,574
소통협력	아이디어공모		479	2,997	319
지식교육DB	법령및통계	관계법령	159	598	126
		주요통계	189	510	118
	정책자료	시민사회위 백서	153	444	68
		정책연구	103	282	22
		학술자료	58	233	40
		컨퍼런스 자료	44	93	14
		해외연수 보고서	63	102	16
		시민사회 표준조례	31	85	17
		공익활동	5	122	179
		교육활동	교육교재	46	225
	NGO 강사은행		8	52	23
	시민사회 연구기관		135	610	132
	비영리단체		255	5,253	615
공지사항			325	945	288
소개	시민통통		187	693	129
	조직		147	671	276
합계			2,387	17,847	5,979

(자료: 국무조정실)

- 이와 같이 저조한 시민통통 플랫폼 이용 현황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통통 플랫폼의 운영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시민통통 플랫폼을 사회대개혁위원회⁷⁰⁾ 활동을 핵심 콘텐츠로 발전시켜 재구성하고, 시민단체 활동소식·정보 등을 주기별 업로드로 하여 진정한 시민사회 소통 플랫폼으로 확장 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시민통통 플랫폼의 기존 이용 현황, 향후 동 플랫폼에 대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통통 플랫폼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70)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사회대개혁 관련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5. 10. 15. ~ 2025. 11. 5.까지 진행되었음.

제2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I. 개 요

1. 2026년도 예산안 규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출연연구기관의 2026년도 출연금예산안 규모는 7,076억 3,800만원으로 2025년도의 5,453억 9,200만원에 비해 1,622억 4,600만원(29.7%)이 증가하였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	545,392	707,638	162,246	29.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비목별 예산안 내역

〈비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545,392	707,638	162,246	29.7
기본사업비	454,931	602,530	147,599	32.4
○ 인건비	342,567	473,878	131,311	38.3
○ 경상운영비	56,132	72,020	15,888	28.3
○ 기관고유사업비	56,232	56,632	400	0.7
특수사업비	93,516	110,555	17,039	18.2
○ 일반사업비	92,200	110,355	18,155	19.7
○ 시설비	1,316	200	△1,116	△84.8
자체수입 출연금 대체	△3,055	△5,447	△2,392	△78.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기본사업비는 6,025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4%인 1,475억 9,900만원이 증가함.

○ 인건비: 전년대비 1,313억 1,100만원(38.3%) 증가한 4,738억 7,800만원

- 출연금 체재 개편(PBS 폐지) 반영: 1,134억원

- 2026년도 처우개선분(3.5%) 등 반영: 164억원

- 2025년도 신규인력 자연증가분(17명): 6억원

- 2026년도 신규인력(21명): 8억원

○ 경상운영비: 전년대비 158억 8,800만원(28.3%) 증가한 720억 200만원

- 출연금 체재 개편(PBS 폐지) 반영: 154억원

- 공공부문 비용절감을 위한 비경직성 경상운영비 10% 감액(공통):
△6억원

- 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15개 기관*): 8억원

* 연구회, 과학, 대외, 산업, 통일, 교통, 노동, 보건, 육아, 직능원, 청소년, 해양, 형사, 환경, 건축

- 재산세 증감분(대학원): △2억원

- 공공요금, 어린이집 경비 등 기관별 소요 반영(13개 기관*): 1억원

* 국토, 에너지, 정보, KDI, 대학원, 교육, 평가원, 농촌, 법제, 여성, 조세, 직능연, 행정

○ 기관고유사업비: 전년대비 4억원(0.7%) 증가한 566억 3,200만원

- 연구기관 평가 증액(연구회): 1억원
- R&D 정책수요 증가를 고려한 증액(과학): 5억원
- 국가승인통계 수행 필수경비 증액(노동): 4억원
- 한시소요 등 사업효율화 감액(대외, 법제): △6억원

□ 특수사업비는 1,105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2%인 170억 3,900만원이 증가함.

○ 일반사업비: 전년대비 181억 5,500만원(19.7%) 증가한 1,103억 5,500만원

- 종료·감액 △182억(196건), 신규·증액 364억(76건)*: 182억원

○ 시설비: 전년대비 11억 1,600만원(△84.8%) 감소한 2억원

- 노후장비 교체, 시설보수 등 공사비 지원(국토): 2억원
 - 장비 교체, 시설보수 완료에 따른 감액(3개 기관*): △13억원
- * 에너지, 대학원, 행정

□ 자체수입 출연금 대체는 54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9,100만원(78.3%)이 증가함.

○ '24년 집행잔액(이월금) 출연금 대체 : △54억원

3. 예산안 내역

〈기관별 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536,192	545,392	707,638	162,246	29.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8,777	22,122	24,215	2,093	9.5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914	17,123	21,504	4,381	25.6
2. 국토연구원	22,185	24,323	35,443	11,120	45.7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816	31,340	35,521	4,181	13.3
4. 산업연구원	24,965	23,973	30,230	6,257	26.1
5. 에너지경제연구원	11,631	12,374	25,486	13,112	106.0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217	15,665	27,320	11,655	74.4
7. 통일연구원	10,926	9,015	11,932	2,917	32.4
8. 한국개발연구원	71,714	68,723	84,197	15,474	22.5
- 본원	46,106	47,316	61,268	13,952	29.5
- 국제정책대학원	25,608	21,407	22,929	1,522	7.1
9. 한국교육개발원	22,219	22,079	28,624	6,545	29.6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327	26,021	38,483	12,462	47.9
11. 한국교통연구원	18,858	18,505	30,138	11,633	62.9
12. 한국노동연구원	15,849	16,244	21,017	4,773	29.4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285	17,071	22,919	5,848	34.3
14. 한국법제연구원	13,874	15,154	17,898	2,744	18.1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006	32,289	39,114	6,825	21.1
- 본원	23,871	23,786	29,578	5,792	24.4
- 육아정책연구소	8,135	8,503	9,536	1,033	12.1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087	16,933	19,549	2,616	15.4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7,818	38,278	47,360	9,082	23.7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2,543	23,586	28,923	5,337	22.6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959	10,350	11,518	1,168	11.3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305	21,103	31,267	10,164	48.2
21. 한국행정연구원	13,906	14,292	16,515	2,223	15.6
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3,379	13,688	14,135	447	3.3
23. 한국환경연구원	21,745	22,900	30,282	7,382	32.2
24. 건축공간연구원	11,887	12,241	14,048	1,807	14.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주요 증감 내역(3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인사연 국제개발협력 14억 5,200만원
- 국토연구원: 정부지원사업 13억 8,000만원
- 산업연구원: 정부지원사업 4억 4,400만원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적 대응과 산업정책 체계 구축 연구
3억 7,400만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부지원사업 37억 1,600만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지원사업 33억 1,600만원
AI 생태계의 동태적 분석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3억 7,700만원
- 한국개발연구원: 정부지원사업 47억 900만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부지원사업 8억 7,000만원
- 한국교통연구원: 정부지원사업 8억 3,000만원
- 한국노동연구원: 정부지원사업 6억 8,800만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지원사업 8억 7,800만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지원사업 19억 2,000만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부지원사업 11억 3,400만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부지원사업 13억 2,300만원
- 한국환경연구원: : 정부지원사업 6억 700만원

<주요 증액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지원사업 11억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기본연구사업 4억 5,900만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 KEI 운영 5억원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4억원 4,800만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생가족패널조사 10억원 900만원

<주요 감액·완료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8억원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5억원
- 산업연구원: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 사업 △4억 3,800만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열펌프(GHP) 시설 교체 6억 8,800만원
- 한국개발연구원: 국가비전 및 전략 제시 사업 △3억 2,400만원
국제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 △3억 2,000만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노후 기숙사 누수 방지공사 4억 9,300만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 △5억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 지역소멸 선제적 대응전략 구축 사업
△3억 3,500만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적
대안개발 △3억 8,300만원

II. 검토의견

1. 연구기관 공통: PBS 폐지와 쟁점

1) PBS 제도의 연혁과 의의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Project-based System)는 연구과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쟁을 통하여 총 연구원가 방식(full cost)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원·관리하는 제도로 1996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반에 도입됨.

□ PBS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적극적인 자체수입(정부·민간수탁사업 등) 확보 및 연구개발을 할 유인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음.

○ 먼저, PBS 도입 이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필요한 지출예산에서 자체수입을 제하고 부족한 금액은 출연금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활발한 자체수입 확보를 할 유인이 부족하였음.

○ 다음으로,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할 유인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음.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 부처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를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구조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연구수행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별다른 노력 없이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하여 연구

개발의 효과를 저해하는 한계가 있었음.

- 특히 1990년대에는 국가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부문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더불어 경쟁, 효율성, 성과주의, 고객지향과 같은 가치가 중시되면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혁신 논의가 전개됨.

□ PBS는 종전의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를 정착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 제고와 수요자(정부)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과 연구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⁷¹⁾

- 첫째, 총원가에 연구비 산정 방식을 도입하였음.

즉, 연구개발사업 편성에서 직접비와 간접비가 총연구원가로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되었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된 출연금 예산은 줄이고, 정부수탁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는 금전적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연구 활동을 촉진함.

- 둘째, 연구책임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권한 부여임.

연구과제 중심의 관리방식을 택함으로써 각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71) 이하의 내용은 아래의 2개 문헌 등을 참고함.

- 이민형·장필성, '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STEPI Insight」 vol. 2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2. 5., p.15
- 김종백, 정병길, 염재호, '정부출연연의 대리문제와 PBS의 한계', 「한국조직학회보(제6권 제2호), 2009. 8. 18., pp. 189- 190

참여연구원의 구성부터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인센티브 배분까지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서 중심이었던 기관운영이 연구자 중심으로 변모하는 데에 일조하였음.

나아가 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다는 장점도 있음.

○ 셋째,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경쟁 확대임.

정부의 연구개발을 공개경쟁의 수주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쟁적 연구환경을 정착시키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수행 능력 및 연구성과를 높이는 데 일조함.

2) PBS의 부정적 효과와 제도 폐지

□ 1996년부터 약 3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PBS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음.

○ 첫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수탁과제의 수주 경쟁은 연구자의 부담을 가중시켰음.

종전과 달리, 연구기관은 정부과제를 수탁하지 아니하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보전받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연구자는 과도한 수탁 연구에 노출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연구성과의 저해를 유발함.

○ 둘째, 권한과 동시에 책임성을 부여받는 연구책임자는 도전적

연구과제보다는 적절한 연구비 집행이나 성과달성이 용이한 과제에 관심을 기울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취지와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듦.

- 셋째, 지나친 과제 수주 경쟁으로 인하여 연구기관 간 협력이 저해되고, 연구개발의 중복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비용이 발생하며 중·장기적인 성과보다는 가시적인 연구에 초점을 두게 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 넷째,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상호 불신 문화가 조성됨.

대부분의 연구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확보를 위한 목적 또는 사후 감사를 고려한 집행에만 초점을 두게 되었음.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 반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수직적 관계가 고착되는 문제에 직면함.

- 마지막으로 수주 경쟁을 통해 인건비를 보전하므로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관 내 최대 부담요소로 작용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력 있는 연구자를 우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유발함.

여기에 2015년부터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경력 연구자의 처우가 더욱 악화되었음.

□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PBS의 한계 극복, 연구환경의 개선, 연구자 처우 및 창의성 향상 및 중·장기 기초연구의 확대 등을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26년,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PBS 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PBS 폐지 방침에 따라 변화되는 연구개발 제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PBS 폐지로 정부수탁과제의 수주 경쟁이 사라지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전하기 때문에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던 연구개발 위탁사업 예산은 감액되는 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은 예년 대비 크게 확대 편성되었음.

즉,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액은 2025년도 예산 5,453억 9,200만원에 비해 약 29.7% 증가한 약 7,076억 3,800만원이고, 이 중 인건비 약 1,313억 1,100만원(38.3% 증가), 경상비 158억 8,800만원 (28.3%)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증가율이 큰 편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정부안 (B)	증△감 (C=B-A)	C/A	비 고
합 계 (1+2+3+4)	545,392	707,638	162,246	29.7	-
1. 인건비	342,567	473,878	131,311	38.3	- 자체수입 출연금 전환(+1,134) - 증원 및 처우개선 3.5% 등
2. 경상비	56,132	72,020	15,888	28.3	- 자체수입 출연금 전환 - 기관별 공통소요 등
3. 사업비	149,748	167,187	17,239	11.5	-
- 기관고유	56,232	56,632	400	0.7	-
- 일반사업	93,516	110,555	17,039	18.2	- 정부지원사업(+22,955) - 기관별 사업검토 등
4. 출연금 대체	△3,055	△5,447	△2,392	△78.3	- 2024년 결산기준, 집행잔액 출연금 대체 처분(△5,44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둘째, PBS 폐지로 개별 정부부처의 연구개발 위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일반사업으로서 ‘정부지원사업’이 신설되었음.

즉, 정부출연연구기관마다 주관부처를 두고, 주관부처는 필요한 연구개발의 수행을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의뢰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편성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주관부처가 의뢰한 연구개발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임.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지원사업’은 총 229억 5,500만원 규모로 전체 일반사업 예산 1,103억 5,500만원 중 약 20.8%를 차지함.

〈 ‘정부지원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주관부처)	출연금 편성	일반사업비		비중 (B/A)
		(A)	정부지원사업(B)	
합 계	707,638	110,355	22,955	20.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215	11,116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504	1,953	57	2.9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	35,443	6,741	1,380	2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교부)	35,521	7,172	56	0.8
산업연구원(산업통상부)	30,230	3,356	444	13.2
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통상부)	25,486	4,462	3,716	83.3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320	6,134	3,316	54.1
통일연구원(통일부)	11,932	1,168	-	-
한국개발연구원(재정경제부)	61,268	9,441	4,709	49.9
KDI 대학원(기획재정부)	22,929	4,291	-	0.0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28,624	2,416	178	7.4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부)	38,483	1,400	870	62.1
한국교통연구원(국토교통부)	30,138	2,297	830	36.1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21,017	2,457	688	2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	22,919	2,282	878	38.5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17,898	4,019	150	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9,578	4,300	262	6.1
육아정책연구소(성평등가족부)	9,536	1,765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평등가족부)	19,549	3,329	42	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기획예산처)	47,360	8,295	1,920	23.1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고용노동부)	28,923	2,890	1,134	39.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성평등가족부)	11,518	2,066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부)	31,267	5,796	1,323	22.8
한국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16,515	3,868	142	3.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법무부)	14,135	2,361	17	0.7
한국환경연구원(기후에너지환경부)	30,282	3,050	607	19.9
건축공간연구원(국토교통부)	14,048	1,930	236	12.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수탁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수탁과제 외의 과제(예: 민간위탁과제, 지방자치단체 위탁과제)에 대해서는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수탁과제 수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행가능하도록 함.

이러한 조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존재 의의가 정부부처의 필요 과제에 대한 수요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종래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을 정부수탁 과제로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정부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할 수밖에 없었으나, PBS 폐지 이후에는 정부가 인건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 하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정부수탁과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임.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과제 및 중앙행정기관의 수탁과제 외의 과제를 통한 수입금액은 총 2,935억원이므로 2026년도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출연금 과제 및 중앙행정기관 수탁과제 외의 과제의 총량 한도는 약 1,467억 5,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됨.

〈2024회계연도 출연금·정부수탁과제 외의 과제에 따른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24년 결산			제한기준 (A*50%)
	총 계 (A=B+C)	직접비 (B)	간접비 (C)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424	4,093	2,331	3,212
국토연구원	10,343	4,198	6,145	5,17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17	500	1,317	909
산업연구원	1,442	396	1,047	721
에너지경제연구원	8,866	3,194	5,672	4,43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14	363	751	557
통일연구원	312	235	77	156
한국개발연구원	9,236	5,501	3,735	4,618
KDI 대학원	6,265	3,791	2,473	3,133
한국교육개발원	37,943	32,455	5,488	18,97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4,862	131,716	13,146	72,431
한국교통연구원	12,255	6,879	5,375	6,128
한국노동연구원	1,198	826	372	5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19	737	982	860
한국법제연구원	2,606	1,008	1,598	1,3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46	945	901	923
육아정책연구소	7,612	6,515	1,097	3,8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11	557	354	4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24	5	119	6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3,468	10,885	2,583	6,73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034	6,626	1,408	4,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663	2,056	1,607	1,831
한국행정연구원	2,814	1,772	1,042	1,4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81	312	269	290
한국환경연구원	7,118	4,388	2,730	3,559
건축공간연구원	928	518	410	464
합계	293,500	230,471	63,029	146,750

3) PBS 폐지에 따른 문제점

- PBS가 가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제도 폐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 첫째, 적절한 대안에 대한 설계 없이 30년간 운영하던 PBS 제도를 갑자기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임.
- 정부는 PBS가 가지는 그간의 비판적 측면을 고려하여 폐지를 선언하였으나, ‘PBS 폐지’라는 정책적 목적에만 몰두하였을 뿐 제도 폐지 이후의 국가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설계와 운영 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PBS를 폐지하면서 고유의 연구역량 회복을 위한 재구조화에 돌입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달리, 경제인문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2026년에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는데,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됨.
- 예를 들어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편성된 ‘정부지원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출연사업, 정부수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정부지원사업’, 여전히 개별 부처가 보유한 수탁과제 예산의 수행에 따른 정부수탁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를 각각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한 대안이 없는 상황임.

- 또한, PBS를 폐지하고 안정적으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매진할 유인이 적다는 PBS 도입 전에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도 폐지 이후 연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부족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둘째,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지원사업’이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지 아니함.

- ‘정부지원사업’은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관 부처(예: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수탁한 연구과제비 중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산출하여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4년만 산정기준으로 한 이유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음.

-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부지원사업’은 47억 900만원으로 일반사업비의 약 49.9%를 차지하는 데 반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정부지원사업’은 1,700만원으로 일반사업비의 약 0.7%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지원사업’의 편성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크고, 통일연구원, 육아정책

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정부지원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

-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간 정부수탁과제의 수를 살펴보면, 2025년 한 해에만 총 1,282건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규편성된 ‘정부지원과제’ 예산 수준으로 종전 수준의 정부수탁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나아가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편성된 ‘정부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개별 정부부처는 여전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 ‘정부지원사업’의 편성 기준과 운영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음.

〈연구기관의 연간 자체수행 및 수탁과제의 수〉

(단위: 건)

기관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합 계	1,083	1,539	885	3,516	923	1,530	811	3,246	925	1,282	636	2,758	775	12	19	806
연구회	30	-	-	30	15	-	-	15	15	-	-	15	15	-	-	15
과학	49	23	76	148	42	22	61	125	41	18	48	107	39	-	-	39
국토	39	146	92	185	42	136	100	277	38	134	80	449	39	-	-	39
대외	81	54	19	154	61	72	23	156	55	52	14	121	22	-	-	22
산업	39	129	98	168	34	129	83	266	39	89	85	394	33	-	-	66
에너지	46	39	77	162	41	32	84	157	43	30	53	126	22	-	-	22
정보	26	84	19	129	25	85	17	127	22	59	10	91	24	-	4	28
통일	24	7	3	34	23	9	2	34	21	5	2	28	19	-	-	19

(단위: 건)

기관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KDI	48	54	49	151	50	45	38	133	55	38	31	124	34	-	-	34
교육	23	45	34	102	26	43	20	89	35	38	20	26	36	-	-	36
평가원	42	140	5	187	37	164	5	206	37	108	2	147	39	-	-	39
교통	36	78	42	168	28	81	37	171	22	63	23	146	24			
노동	13	30	14	57	10	33	21	64	10	29	14	53	12	12	15	39
농촌	55	49	25	129	48	39	22	109	43	39	23	105	38	-	-	38
법제	33	61	48	94	31	58	48	142	29	33	38	204	18	-	-	222
보건	48	108	26	182	40	90	27	157	39	80	23	142	40	-	-	40
여성	43	50	9	102	43	52	15	110	43	43	10	96	39	-	-	39
조세	35	78	5	118	31	66	6	103	30	62	2	94	29	-	-	29
직능연	49	50	28	127	41	54	22	117	42	44	21	107	40	-	-	40
청소년	24	32	9	65	17	27	1	45	19	25	3	47	-	-	-	-
해양	69	99	57	225	70	104	41	215	57	89	39	185	43	-	-	43
행정	49	31	18	98	37	32	15	84	37	35	9	81	37	-	-	37
형사	41	39	9	89	35	28	8	71	32	32	4	68	27	-	-	27
환경	50	62	49	161	39	63	48	150	40	69	37	146	43	-	-	43
건축	44	27	6	77	46	23	4	73	38	26	4	68	34	-	-	34
대학원	18	7	50	75	20	2	50	72	18	3	47	68	15	-	-	15
육아	29	17	18	64	22	41	13	76	25	39	4	68	14	-	-	1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셋째, ‘정부지원사업’과 ‘수시연구사업’의 구분이 모호하여 운용 과정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따라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로서 기본사업비 내에 ‘수시연구사업’을 운용해 왔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출연금 사업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사업비	기관고유사업비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 <u>수시연구</u>
		연구지원사업
특수사업비	일반사업비	
	시설비	

(자료: 전문위원실)

- 2026년도 예산안에도 경제·인문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총 27억 6,300만원의 ‘수시연구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체 기본연구사업 예산 214억 4,300만원 중 약 12.9%를 차지함.
- ‘정부지원사업’과 ‘수시연구사업’은 정부부처의 수요에 따라 과제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점,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사전에 어떠한 과제를 요청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여 집행과정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고 구분 실익도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여기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26년도부터 ‘수시연구사업’의 비중한도를 기본연구사업비의 10%에서 20%로 높일 방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지원사업’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연구사업 내 수시연구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기본연구사업 예산(A)	수시연구사업 예산(B)	비율(B/A)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55	225	21.3
국토연구원	928	100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29	147	11.1
산업연구원	1,546	172	11.1
에너지경제연구원	792	80	1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6	24	12.9
통일연구원	555	100	18.0
한국개발연구원	680	68	10.0
KDI 대학원	2,337		-
한국교육개발원	1,298	165	1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87	159	10.1
한국교통연구원	414	42	10.1
한국노동연구원	780	154	1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88	129	10.0
한국법제연구원	849	109	1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60	120	10.3
육아정책연구소	764	123	16.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08	113	16.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36	70	13.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003	105	1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30	60	1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10	130	18.3
한국행정연구원	832	84	10.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67	57	10.1
한국환경연구원	1,265	130	10.3
건축공간연구원	617	97	15.7
합 계	23,780	2,763	11.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게다가 우리 위원회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수시연구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정부지원사업’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음.

□ 넷째, PBS를 폐지하더라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 증대가 가능할지에 관한 사항임.

○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 외에는 연구기관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오히려 연구 자율성을 보다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은 여전히 1,618억 300만원에 불과하여 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기 이전인 2023년 예산(1,780억 5,900)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연도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비 추이〉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3년	2024년(증가율)	2025년(증가율)	2026년(증가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9,232	9,309(△68.2)	12,047(29.4)	13,552(1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991	4,256(△14.7)	4,097(△3.7)	4,203(2.6)
국토연구원	6,736	6,625(△1.6)	8,108(22.4)	8,823(8.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536	11,632(△14.1)	12,633(7.0)	12,052(△4.6)
산업연구원	5,990	8,328(39.0)	6,872(△17.5)	5,875(△14.5)
에너지경제연구원	3,325	2,872(△13.6)	3,414(18.9)	6,149(8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329	3,525(5.9)	3,556(0.9)	6,982(96.3)
통일연구원	1,874	2,406(28.4)	203(△91.6)	2,466(1,114.8)
한국개발연구원	9,341	10,195(9.1)	10,346(1.5)	13,499(30.5)
KDI 대학원	13,310	13,677(2.8)	8,482(△38.0)	6,521(△23.1)
한국교육개발원	4,139	5,363(29.6)	4,337(△19.1)	4,287(△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912	2,986(△23.7)	2,962(△0.8)	3,456(16.7)
한국교통연구원	3,583	3,120(△12.9)	2,299(△26.3)	3,056(32.9)
한국노동연구원	4,202	3,606(△14.2)	3,649(1.2)	4,648(2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073	4,379(△13.7)	4,231(△3.4)	4,817(13.9)
한국법제연구원	5,963	5,587(△6.3)	6,555(23.1)	5,951(△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924	7,064(△10.9)	6,477(△8.3)	6,350(△2.0)
육아정책연구소	3,256	3,020(△7.2)	3,209(6.3)	2,818(△1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013	4,742(△5.4)	5,297(11.7)	4,918(△7.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911	9,156(△7.6)	8,612(△5.9)	10,877(26.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4,698	3,540(△24.6)	4,041(14.2)	5,250(29.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273	2,825(△13.7)	2,980(5.5)	2,785(△6.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221	6,625(△8.3)	5,915(△10.7)	6,775(14.5)
한국행정연구원	5,878	5,071(△13.7)	5,142(1.4)	5,064(△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560	3,973(11.6)	4,008(0.9)	2,961(△26.1)
한국환경연구원	5,959	4,128(△30.7)	4,445(7.7)	4,835(8.8)
건축공간연구원	2,830	2,664(△5.9)	2,776(4.2)	2,833(2.1)
합계	178,059	150,674(△15.3)	146,694(△2.6)	161,803(10.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다섯째,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본연의 연구사업에 매진하도록 수탁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수탁과제 외의 과제(예: 민간위탁과제, 지방자치단체 위탁과제) 수행은 제한할 방침(각 기관이 2024회계 연도에 수행한 수탁과제 수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행)인데, 일률적인 50% 한도설정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함.
- 예를 들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한 연구사업은 위탁 주체가 시·도 교육청이므로 위의 방침처럼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수탁 과제 수행을 제한할 경우 일부 특별교부금 연구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부문의 연구과제 중 정치적 중립성 또는 보안성이 요구되는 과제는 불가피하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탁과제에 대한 일률적인 한도 설정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연구과제의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 근본적으로 이러한 방침은 PBS 폐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 수탁과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방안, 수행과제에 대한 정교한 성과평가 제도의 마련으로 해결되어야 함.

4) 향후 방향

- PBS가 30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 수행 원칙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정부부처-경제·인문사회연구회-각 연구기관 등 경제·인문사회 연구 분야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PBS 폐지 이후에 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임무 정립, 연구개발 제도 설계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부와 연구기관 간의 신뢰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30년까지 PBS 제도의 완전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새 제도의 안착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봄.
- 다음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연구과제, 신규 편성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과제, 정부수탁과제,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등으로부터 수탁하는 과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와 인센티브를 설계하여야 함.
- 아울러 정부가 PBS 폐지로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수탁과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내실 있는 성과평가 방안을 설계하여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일관된 기준 설정과 함께 ‘수시연구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정부수탁사업의 수행을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부처는 위탁사업예산을 두고 있어 정부수탁사업의 운영방식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정부지원사업’을 편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나눌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정부지원사업’과 ‘수시연구사업’ 간의 기준이 모호한 점 등은 PBS의 급작스러운 폐지에 따른 부실한 제도 설계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으므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원사업’은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는 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 예산만 지원하고, 개별 정부부처에 필요한 과제 수탁예산을 부여함으로써 예산 운용 체계를 단순하게 설계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기관 공통: 정보시스템 관련 일반사업을 기본사업으로 변경 필요

1) 연구사업의 분류: 기관고유사업(기본사업, 연구지원사업)과 일반사업

□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연구사업을 기관 고유사업, 일반사업, 수탁용역사업, 정부대행사업으로 구분하고, 기관고유사업은 다시 기본연구사업과 연구지원사업으로 분류함.

○ 일반사업은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이나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설비와 함께 특수사업으로 명명됨.

〈연구사업의 정의〉

구 분	내 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 (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2)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은 일반사업에서 기본사업으로 변경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연구지원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 총 106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들 사업은 모두 기관고유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임.

<정보시스템 관련 일반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일반사업명	시작연도	2026 예산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서비스 사업	2010	302
	출연연 통합 업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016	1,250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사업	2017	1,266
	출연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구축 및 운영	2025	69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010	184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확충사업	2016	101
국토연구원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2017	38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007	350
산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2016	260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15	2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17	152
통일연구원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유지	2010	59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16	458
KDI국제정책대학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2024	285
	교육인프라 유지보수 및 시스템개발	2006	115
한국교육개발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03	824

기관	일반사업명	시작연도	2026 예산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04	1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축	2011	25
	공공기관 정보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운영	2024	344
한국교통연구원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2019	85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3단계)	2022	69
한국노동연구원	통합유지보수사업	2019	1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 사업	2019	120
한국법제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013	3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2011	257
육아정책연구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005	135
	전산실 운영사업	2005	5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2011	2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사업	2003	29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기간계시스템 운영 지원	2013	135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2017	9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2011	217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2017	1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보안시스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2015	210
한국행정연구원	E-KIPA지식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2008	25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	2011	169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2011	96
한국환경연구원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2016	135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2016	64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012	135
합계			10,67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보시스템 사업은 그 성격상 한시적 사업이 아닌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항구적으로 운영되는 필수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먼저, 비록 여러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편성과정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심의를 받는 기관고유사업과 달리, 일반사업은 개별 연구과제마다 매년 그 타당성을 심의받아야 하는데, 필수사업에 가까운 정보시스템 예산에 대해 매년 존속 여부의 심사를 하는 것은 행정 낭비의 우려가 있음.
- 다음으로, 일반사업은 재량지출에 해당하여 舊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0% 이상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시스템 유지·보수와 같은 필수적인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마지막으로 편성의 비일관성의 문제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일반사업으로 편성된 정보시스템 사업과 별도로 기관고유사업에 전산운영사업 등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편성된 정보시스템 사업은 그 지출목적과 내용이 실제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정보시스템·전산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전산지원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 PC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확충사업	- 바이러스 백신 및 내 PC자킴이 라이선스 계약 - 노후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 -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비
국토연구원	정보기술비	- 전산자원통합 유지보수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전산자원통합 유지보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정보전산운영 사업	- 통합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산업연구원	2023 전산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보안서버(mOTP) 구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정보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 템 유지보수	- 그룹웨어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추진
에너지경제 연구원	에너지·자원 전산 NETWORK 운영	- 성과확산시스템 고도화 마스터 플랜(ISMP) 수립 -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기록물생산관리시 스템 기능개선 사업 - 통합정보시스템 (KEEI-ERP) 웹표준화 및 호환성사업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전산개발 운영	- KISDI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등 유지보수 -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 백신사용료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서버 및 스토리지, 차세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 - 웹메일 보안 SMS 서비스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통일연구원	전산시스템 운영·유지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 항온항습기 및 UPS유지보수비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유지	- 노후내부망 자료전송 서버구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한국개발 연구원	전산개발 및 운용관리	- 하드웨어 구입 - 소프트웨어 사용료 - 경제정보센터 웹시스템 유지보수 - 포탈시스템 및 MIS 기능 고도화 -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백신 및 보안, 통계 소프트웨어 사용료 - 포탈, 서버, 방화벽, V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한국교육 개발원	정보자료·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관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한국교통 연구원	전산개발사업	- 신규 웹사이트 보안 약점 점검 및 모의 침투훈련 사업 - 인사노무 전자 시스템 유지 및 기능개선 용역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 연구 및 행정업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 - 문서중앙화 솔루션 유지관리를 위한 에이전트 기능개선 사업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	- 보안솔루션 구매비
한국노동 연구원	정보자료 (전산) 운영	- 업무용 전산기기 임차료 - 근로시간 관리 기능 개선사업	통합유지보수 사업	- 업무용 전산기기 임차료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전산·정보 시스템 운영	- IT인프라,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공간정보 분석용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 사업	- 홈페이지 및 CRM 유지보수 - 노후 DB서버 교체 - 침입탐지시스템 도입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한국법제 연구원	법제정보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사업	- 각종 라이선스 및 백신 구입 - 정보보호 시스템 등 통합 유지보수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연구원 국영문 홈페이지, 그룹웨어 및 업무포털시스템, 원내 서버(MIS, CAPI 등)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그룹웨어 및 업무포털시스템 기능개발 및 유지관리
육아정책 연구소	연구지원 전산운영	- 정보보인감사용 PC렌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통합유지보수대금
			전산실 운영사업	- 전산실 인터넷 전용선, 전기 사용료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정보시스템 운영	- 기관홈페이지 유지보수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구축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전산운영부문 운영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 PC유지보수비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 보안 관련 라이선스 계약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평생직업교육 훈련 정보화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기간제시스템 운영 지원	-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서버 변경사업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HRD웹정보 서비스 생성·운영사업	- 리포지터리 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등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전산·정보시스 템 관리 및 운영	- 웹메일 및 메신저 유지보수 - 전자도서관 솔루션유지보수 - 원대표홈페이지 기능수정 개선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전산장비유지보수 - H/W 통합 유지보수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소프트웨어 구매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전산개발 및 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보안시스 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 KMI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한국행정 연구원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E-KIPA지식 행정포털시스 템 유지보수	- 홈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한국환경 연구원	전산운영	- KEI 연구 업무 시스템 서버 SSD교체 및 윈도우 서버 라이선스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 KEINS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 KEI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용역
건축공간 연구원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 보안 소프트웨어 임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정보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을 일반사업이 아닌 기관고유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연구기관 공통: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예산 증액 필요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개요 및 연혁

□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란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⁷²⁾ 환경의 고유한 특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구축·운영된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접근 방식을 말함.

□ 정부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을 목표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나아가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23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주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모델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기관의 자체 서버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그 이용료를 지원받아 왔음(18개 기관, 67종 정보시스템).

○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였고, 2025년 11월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1개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85종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7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네이티브 센터 사업으로 운용 중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는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공유하고, 원활한 공동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정보시스템의 관리 효율을 증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인프라 비용의 절감·기관별 중복투자의 방지·필수서비스 공동활용 등의 장점이 있음.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업자(MSP: Managed Service Provider)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MSP는 (주)안랩클라우드메이트임.
- 구체적으로 공용 인프라 및 통합 보안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개별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소프트웨어(SaaS)를 운용하는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이원화되어 그 이용료를 지불함.
- 2025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총 10억 4,600만원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그 이용료를 지원하였음.
- 2025년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를 운용하는 22개 기관 중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12개 기관은 그 이용료를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거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MSP와의 협상을 통해 이용료 지출을 절감하여 그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연구회	과학	대외	에너지	통일	노동	여성	해양	형사	육아	합계
예산	690	6	6	24	85	16	37	70	37	75	1,04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예산 증액 필요

□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운영 예산은 총 12억 500만원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억 9,000만원 등 9개 기관은 예산당국에 요구한 만큼 예산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통일연구원 등 9개 기관은 요구액에 미달하였고, 이 중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4개 기관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음.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관명	예산요구액(A)	예산 편성 금액(B)	편차(A-B)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90	690	-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	15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	20	-
4	에너지경제연구원	30	30	-
5	통일연구원	129	85	44
6	한국개발연구원	40	40	-
7	한국교육개발원	36	36	-
8	한국노동연구원	16	16	-
9	한국법제연구원	31	-	31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9	37	52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5	45	-
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5	15	-
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6	-	196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8	70	8
15	한국행정연구원	99	31	68
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41	-	141
17	건축공간연구원	129	-	129
18	육아정책연구소	110	75	35
합계		1,909	1,205	70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은 이미 종전의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이관·전환한 후 MSP에게 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舊 서버로 다시 이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를 통하여 이메일, 기관홈페이지, 행정·회계·결재 등을 지원하는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자도서관, 사내메신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예산당국에 반영을 요청하였던 금액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미반영된 9개 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 7억 400만원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연구기관 공통: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철저한 관리·운영 필요

□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는 국가정책수립 기여 및 구성원들의 사기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서 장기간 재직하고 퇴직한 직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그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 따라 재계약 인원을 포함하여 매년 기관 정원의 10%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 별로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음⁷³⁾.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육아정책연구소를 제외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은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26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8개 연구기관에서 총 107명의 퇴직자를 고용할 예정으로, 참여 연구과제 및 실제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업 내 인건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2026년 예산안은 35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73)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정한 표준지침으로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의 선발대상·규모·절차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2026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예산안〉

(단위: 명, %, 백만원)

기관 (약칭)	예산정원 (A)	퇴직자재고용 인원(B)	비율 (B/A*100)	예산(안)
연구회	96	-	-	-
과학	162	5	3.1	174
국토**	276	3	1.1	-
대외	215	8	3.7	319
산업	204	11	1.5	513
에너지	170	-	-	-
정보	174	2	1.1	36
통일	98	4	4.1	242
KDI	467	12	2.6	441
대학원	167	-	-	-
교육	214	-	-	-
평가원*	352	-	-	-
교통	245	6	2.5	311
노동	148	8	5.4	390
농촌	126	2	1.5	103
법제	134	-	-	-
보건	206	7	3.4	274
육아*	62	-	-	-
여성	127	3	2.4	3
조세	369	-	-	-
직능	190	10	5.3	80
청소년**	91	1	1.1	-
해양***	197	6	3.0	-
행정	117	4	3.4	102
형사	104	2	1.9	32
환경	225	13	5.8	506
건축	111	-	-	-
합 계	5,047	107	2.1	3,526

*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미운영

** 국토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을 활용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탁사업 내 인건비 등을 활용하여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비를 집행할 예정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의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함)에 따르면, 선발대상은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정규직 재직기간 전체 근무성적 평가와

인사위원회 평가를 종합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우수성 심사)로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직종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각 기관별로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토연구원 등 12개 연구기관은 선발기준, 평가방법 및 재계약 기준 등을 「운영기준」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5년 이상 근속 및 우수성 심사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수성 심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⁷⁴⁾.

다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실제 운영 시에는 우수성 심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함.

○ 또한, 「운영기준」에 따르면 근속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징

74) 한국노동연구원 「정년퇴직자 임용지침」

제3조 (임용) ① 정년퇴직자의 재직시와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이를 별정직원이라 한다.

②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급으로 정년퇴직하는 직원에 한하여 명예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로우대자운영지침」

제3조 (대상) 공로우대자는 연구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자 중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자로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로우대자임용요령」

제3조(대상) 공로우대자는 연구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예정인 자 중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자로 한다.

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 13개 기관⁷⁵⁾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국토연구원⁷⁶⁾,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에 따라 임용된 퇴직자에 대한 업무평가 및 재고용 심의시 업무평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관련 규정〉

(2025. 10. 기준)

기관	선발요건 (15년 이상 근속, 우수성 심사)	선발제한 (중징계 이상)	업무평가	재계약 시 업무평가 활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
국토연구원	○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
산업연구원	○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
통일연구원	○	×	○	○
KDI	○	○	○	○
KDI국제정책대학원	○	○	○	○
한국교육개발원	○	○	○	○
한국교통연구원	○	○	○	○
한국노동연구원	×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7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76) 다만, 국토연구원은 임용된 퇴직자에 대한 업무평가 없이 퇴직자 전문성 활용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기관	선발요건 (15년 이상 근속, 우수성 심사)	선발제한 (중징계 이상)	업무평가	재계약 시 업무평가 활용
한국법제연구원	o	x	o	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x	o	o
한국여성정책연구원	x	x	x	x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	o	o	o
한국직업능력연구원	o	o	o	o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o	o	o	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o	x	o	o
한국행정연구원	o	o	o	o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o	x	o	o
한국환경연구원	o	o	o	o
건축공간연구원	o	x	o	o
규정 미비 기관 합계	3개	13개 기관	4개 기관	4개 기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또한, 보수지급 상한액과 관련하여 「운영기준」은 퇴직 2년 전 연봉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대외경제연구원⁷⁷⁾ 등 7개 기관은 「운영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2025. 10. 기준, 단위: 명, %, 백만원)

기관	보수 지급 상한
대외	「촉탁직 운영 기준」 - 정년퇴직 후 1년차: 정년퇴직 당해연도 임금피크 감액제도 적용 전 정상 기본연봉액의 70% + 정년퇴직 당해연도 성과평가액(분기별 고과평가급 총합)의 70% - 정년퇴직 후 2년차: 정년퇴직 당해연도 임금피크 감액제도 적용 전 정상 기본연봉액의 60% + 1년차 재고용 연도의 성과평가액(분기별 고과평가급 총합)의 60%

7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KIEP 퇴직자 전문성 활용 제도 운영규칙」을 2025년 11월 중 제정할 예정으로 2026년 이후 재고용 직원은 60%이내의 보수지급 상한액의 적용을 받아 해당 기준에 맞춰 2026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답변함.

「KIEP 퇴직자 전문성 활용 제도 운영규칙」 제10조(보수) ① 촉탁직원의 보수는 퇴직 2년 전 연봉의 60% 금액 이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기관	보수 지급 상한
	- 정년퇴직 후 3년차: 정년퇴직 당해연도 임금피크 감액제도 적용 전 정상 기본연봉액의 60% + 2년차 재고용 연도의 성과평가액(분기별 고과평가급 총합)의 60%
에너지	「연구원공로자우대제도 운영규칙」 - 1차년도 명예직의 임금은 퇴직 직전 연봉급(임금피크제에 따른 조정 후, 평가등급 미반영 금액 기준)의 70% - 2차년도 이후 명예직의 임금은 퇴직 직전 연봉급(임금피크제에 따른 조정 후, 평가등급 미반영 금액 기준)의 40%
교육	「퇴직자 전문성 활용 지침」 - 일반분야는 예산편성·집행지침 과제단위 위촉직 지급기준의 석사, 연구분야는 예산편성·집행지침 과제단위 박사 기준의 초임보수 적용
노동	「연구원공로자 임용지침」 - 1차년도 : 만58세 연봉(B등급에 해당하는 연봉)의 65% - 2차년도 : 만58세 연봉(B등급에 해당하는 연봉)의 60%
농촌	「명예위원 선발요건 및 운영지침」 - 1년차 명예위원의 보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계약연봉의 70% 이내를 기준으로 근무기간 중 월할 계산하고, 2년차 이후는 4천 1백만원 이내에서 원장이 근무형태 또는 업무 참여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함.
형사	「공로연구위원 임용지침」 - 원장은 공로연구위원에 대하여 주5일제(월 보수액 100%), 주4일제(월 보수액 80%), 주3일제(월 보수액 60%)로 구분하여 처우
환경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규칙」 - 명예행정원 및 명예전문원 연봉은 임금피크 적용 전 3년 평균 연봉의 60%금액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러한 각 기관별 운영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 내역을 보면, 「운영기준」에서는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평가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1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업무평가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재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노동연구원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내역>

구분	인건비 편성·지출 사업명	수행 업무	1차 계약 계약기간	업무 평가	재고용 여부 및기간
연구직	AI시대의 노동과정 변화와 고용 등	데이터 구축 및 실증분석 방법론 자문 등	2023.7.21.~ 2025.7.20.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연구직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연구 등	실태조사 설계 및 연구방법론 자문 등	2023.11.22.~ 2025.11.21.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전문직 (전산)	통합유지보수사업 등	그룹웨어 등 업무시스템 운영·개선 자문 등	2024.1.28.~ 2026.1.27.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전문직 (출판)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연구 등	보고서 교정·교열 지원, 번역자료 검토 등	2024.2.13.~ 2026.2.12.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행정직	기관고유사업(연구 지원) 등	토론회 및 세미나 기획·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등	2024.4.6.~ 2026.4.5.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연구직	기관고유사업(기본 연구) 등	사례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자문 등	2024.4.17. ~ 2026.4.16.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전문직 (지식 자원)	기관고유사업(연구 지원) 등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 자문	24.7.26. ~ 2026.7.25.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연구직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연구	실태조사 설계 및 결과분석 자문	2024.11.2. ~ 2026.11.1.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연구직	외국인·이민자 수요 분석 및 영향평가 사업 등	외국인력 도입 허용분야 결정 관련 인력부족리스트 자문 등	2024.12.20. ~ 2026.12.19.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연구직	지속가능한 미래 전환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개선방안 연구 등	청년 고용정책 유형화 및 평가 자문, 통계집 발간 관련 수치 검토 등	2025.4.17. ~ 2027.4.16.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또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내부규정에 따라 우수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한국노동연구원은 15년 이상 근속연수에 미달한 사람도 2026년도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대상으로 선발한 것으로 보임.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6년도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대상 선발〉

연구기관	퇴직자 재고용 명단 (무기명)	근속연수	우수성 심사 실시여부
한국노동연구원	000	29년	x
	000	24년	x
	000	8년	x
	000	35년	x
	000	28년	x
	000	34년	x
	000	31년	x
	000	29년	x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00	16년 10개월	x
	000	28년 7개월	x
	000	36년 5개월	x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해당 제도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손실의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선발대상 및 절차, 근로조건 및 처우 등을 명시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 인력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 활용이라는 당초 취지대로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연구기관별 자격·선발절차·운영규모·계약의 적절성 등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5. 연구기관 공통: 외부위탁용역·자문 등 표기 공통규정 마련 필요

□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중 정부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되고 최종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는 기본연구사업과 일반사업(정보화 사업 제외)의 자문비와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과제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는 외부용역비의 2026년도 예산안은 211억 7,000만원으로 사업비의 1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6년도 사업비⁷⁸⁾ 내 자문비 및 외부용역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사업비 (A)	자문비 (B)	외부용역비 (C)	B+C	(B+C)/A
합 계(27)	106,906	5,107	16,063	21,170	19.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402	583	8,340	8,923	85.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666	226	6	232	8.7
국토연구원	5,909	228	1,306	1,534	26.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095	19	485	504	6.2
산업연구원	4,198	307	278	585	13.9
에너지경제연구원	1,338	-	280	280	2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852	30	270	300	10.5
통일연구원	1,664	83	184	267	16.0
KDI	4,954	268	687	955	19.3
KDI국제정책대학원	6,228	37	-	37	5.9
한국교육개발원	2,890	40	262	302	1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732	36	104	140	8.1
한국교통연구원	1,727	158	338	496	28.7
한국노동연구원	2,379	312	230	542	2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72	227	143	370	14.4
한국법제연구원	4,214	63	415	478	1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203	259	82	341	6.6
육아정책연구소	2,344	48	115	163	7.0

기관명	사업비 (A)	자문비 (B)	외부용역비 (C)	B+C	(B+C)/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568	209	150	359	1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317	5	557	562	6.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534	94	130	224	8.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70	89	-	89	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73	695	523	1,218	24.5
한국행정연구원	4,293	227	91	318	7.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663	52	350	402	15.1
한국환경연구원	3,509	492	437	929	26.5
건축공간연구원	2,412	320	300	620	25.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그러나, 연구기관은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실태조사 또는 설문용역이 아닌 원고 위탁 또는 특정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위탁의 명목으로 자문비와 외부용역비를 편성하고 있음에도, 협동연구사업 이외에 이러한 자문과 외부용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판단 기준 및 표기와 관련한 연구회의 공통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일반사업 중 협동연구사업에 대해서는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⁷⁹⁾에서 최종보고서 저자표기 공통기준을 정하면서, 저자란 해당 연구

78) 사업비: 기본연구사업비 + 일반사업비(정보화사업 제외)

79)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별표7>

○ 저자 표기 공통기준

-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저자로 표기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기여) 연구의 기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보고서 집필 등 해당 연구에 실질적 지적 기여를 한 자
 - ② (책임)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자
 - ③ (협의)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자

○ 저자 등 표기 방법

- 저자는 연구보고서 표지에 성명만 기재
- 연구진은 연구보고서 내지에 저자를 포함하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역할을 구분하여 기재
- 기타 기여자는 자문, 감리 등 역할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감사의 글에 기재
- 저자의 결정은 연구진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사업 심의기구 등을 통해 결정한다.

에 실질적 지적 기여를 하고, 연구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개인을 말하고, 기타 기여자는 자문, 감리 등 역할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감사의 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⁸⁰⁾에서는 연구참여자 실명제를 규정하면서 연구과제의 최종연구보고서 발간 시에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을 기여도 순에 의거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과 외부용역의 표기에 관련된 규정은 없음.

□ 또한, 연구기관별 자문 또는 외부용역에 대한 표기 기준을 살펴보면, 통일연구원 등 9개 기관은 자문의 경우 저자 또는 기여 등에 표기하지 않고, 통일연구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저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는 내지(속표지) 또는 서문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연구원은 외부용역에 대해서도 저자 또는 기여 등에 표기하지 않고 관련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임.

80)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34조(연구책임자 실명제) ① 연구과제의 최종연구보고서 발간 시에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을 기여도 순에 의거 명기한다.

② 연구기여도가 연구보고서의 장·절 별로 명확히 구분되거나 이를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절 별로 연구참여자들을 구분하여 명기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 등 자문 또는 외부위탁용역에 대한 표기 기준〉

기관명	저자 또는 기여 등 표기		저자 또는 기여 등 기준	
	위탁	자문	위탁	자문
통일	O	X	- 「연구윤리규정」 제5장 저자 표기 · 기여, 책임, 협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연구윤리규정」 제5장 저자 표기 · 저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내지(속표지) 또는 서문 등에 기재
교통	X	X	- 해당없음	- 해당없음
농촌	O	X	- 「연구업무관리규정」 · 내표지 이면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위탁연구자 등과 연구 참여분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해당없음
육아	O	X	-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 제3조 ②항 · 연구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적 기여를 하며,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경우 공동저자로 표기	-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 제3조 ②항 · 보고서 작성에는 직접 기여하지 않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단순한 자문 역할만 수행한 자는 저자로 포함하지 않음
여성	O	X	- 「연구발간물작성및발간 지침」 제9조	- 「연구발간물작성및발간 지침」 제9조
조세	O	X	- 「연구보고서 저자 인정 기준 및 표기에 관한 규정」 제4조(저자 인정 기준) · 연구보고서 집필, 연구의 기획 및 설계, 수집된 연구데이터의 분석 또는 해석에 실질적 기여를 한 자 ·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 해당 연구의 참여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자	- 해당없음

기관명	저자 또는 기여 등 표기		저자 또는 기여 등 기준	
	위탁	자문	위탁	자문
직능연	O	X	- 「연구·사업 운영지침」 제5조(연구진 구성과 외부 연구자 활용), 제5조의2(최종 보고서의 저자표기) - 「외부 전문가 운영지침」 제12조(위촉요건), 제14조(수당) · ‘외부 공동연구원’ 위촉 시에만 ‘공동 저자’로 인정	- 해당없음
청소년	O	X	「연구매뉴얼」 내의 I. 고유사업운영 및 관리 4. 연구사업 추진과정 1) 연구진 구성 · 저자: 연구진 간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합의한 자 ※공동연구원: 기여, 책임 및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자	- 기타 기여자는 자문, 감리 등 역할을 구분하여 보고서 뒷부분 내지에 기재하거나 감사의 글에 기재
형사	O	X	- 「연구윤리규정」 제10조(부당한 저자 표기) · 저자: 연구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집필자로서 해당 연구에 실질적 지적 기여를 하고 연구에 책임질 것을 동의하며, 연구진 간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자 -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저자 결정	- 해당없음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와 같이 협동연구 외의 일반사업과 기본연구사업의 경우 외부용역 및 자문을 통해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최종보고서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여부와 관계 없이 외부용역 또는 자문을 표기 하지 않는 것은 연구과제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규정」⁸¹⁾에 따르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⁸²⁾.

□ 따라서, 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연구 이외의 연구사업에 대해서도 외부용역 또는 자문의 저자 또는 기여 표기에 대해 연구회 차원에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규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인문사회 내부규정임.

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연구부정행위”란 연구활동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연구회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제시

6. 연구회 공통: 대외활동 관리 철저

□ 2024년 기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직원들의 대외활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자문, 평가, 토론 등의 활동으로 한 해 동안 57,759건의 활동에 대해 총 195억 8,000만원을 신고하였음.

○ 대외활동 유형별 빈도는 자문 21,386건(63억 400만원), 평가 15,952건(42억 3,100만원), 기타 9,451건(5,712건), 토론 4,000건(8억 7,300만원), 강연 3,507건(15억 800만원), 발표 3,468건(10억 5,2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별 대외활동 빈도는 환경연구원은 5,174건, 국토연구원 3,593건, 산업연구원 3,281건, 한국교육개발원 3,110건 순으로 가장 높고,

○ 기관별 대외활동 사례금은 산업연구원 15억 3,700만원, 국토연구원 13억 7,200만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2억 6,100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억 9,500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대외활동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약칭)	자문		평가		토론		발표		강연		기타		합계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연구회	46	12	293	74	32	7	3	0.8	30	12	29	49	433	155
과학	637	278	884	334	87	25	187	87	91	62	1,057	475	2,943	1,261
국토	1,629	396	956	271	216	50	228	74	203	84	361	497	3,593	1,372

기관명 (약칭)	자문		평가		토론		발표		강연		기타		합계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대외	574	262	565	131	262	54	167	52	174	96	448	211	2190	806
산업	1,267	434	944	282	265	74	233	95	99	46	473	605	3,281	1,537
에너지	540	172	158	39	179	45	133	48	41	16	79	49	1130	369
정보	168	83	501	128	253	62	51	19	42	30	187	95	1,202	416
통일	191	28	443	48	148	21	147	28	312	101	791	149	2,032	374.3
KDI	720	303	396	123	298	96	35	13	83	41	90	107	1,622	683
대학원	229	475	163	66	36	10	64	30	77	80	110	43	679	704
교육	1,051	214	1,182	249	96	15	128	29	258	58	395	132	3,110	698
평가원	461	126	414	101	22	3	34	9	209	81	41	88	1,181	408
교통	1,430	355	508	150	75	20	178	56	43	17	246	134	2,480	732
노동	1,094	276	730	238	120	25	167	53	111	46	598	445	2,820	1,085
농촌	800	199	674	202	157	34	134	45	154	67	168	116	2,087	662
법제	675	245.5	98	29	92	21.5	88	29.3	38	15.1	722	300	1,713	640
보건	1,369	299	920	238	172	34	151	51	149	61	182	512	2,943	1,195
육아	239	29	267	34	35	3	55	13	55	9	448	98	1,099	186
여성	433	83	526	111	141	24	136	32	128	47	740	121	2,104	418
조세	581	189	2	6	46	8	53	16	34	20	56	87	772	326
직능	773	255	639	367	111	31	77	28	59	25	358	407	2,017	1,113
청소년	899	224	718	200	57	13	56	17	105	49	301	232	2,131	633
해양	529	218	548	111	458	73	323	48	176	63	374	77	2,408	590
행정	1,358	428	562	169	98	22	68	21	274	121	532	378	2,892	1,139
형사	550	104	435	102	128	23	107	31	126	107	386	235	1,732	602
환경	2,254	400	1,719	240	329	59	393	101	299	92	180	31	5,174	923
건축	889	217	707	188	87	21	72	26	137	62	99	39	1,991	553
합계	21,386	6,045	15,952	4,231	4,000	873.5	3,468	1,051	3,507	1,581	9,451	5,712	57,759	19,580.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년도 기관별 대외활동 1회당 100만원 이상 신고 건수 및 동일인 대외활동 신고 건수에 따르면,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대외활동 1회당 100만원 이상 신고 건수는 1,935건이고, 동일인이 대외활동으로 100회를 초과하여 신고한 건수는 38건으로 집계됨.

〈2024년도 기관별 대외활동 1회당 100만원 이상 / 동일인 대외활동 신고 건수〉

(단위: 건)

기관명 (약칭)	1회당 100만원이상 신고 건수	동일인 대외활동 신고 건수		
		50회 미만	51회-100회	100회 초과
연구회	19	44	-	-
과학	166	99	13	3
국토	157	59	13	2
대외	129	135	10	-
산업	225	137	13	3
에너지	21	104	4	-
정보	40	114	2	-
통일	38	49	14	2
KDI	101	1,622	-	-
대학원	28	60	2	-
교육	21	198	11	3
평가원	18	160	-	-
교통	31	154	7	-
노동	117	73	14	6
농촌	61	139	9	-
법제	78	71	10	-
보건	147	130	13	2
육아	19	38	4	-
여성	19	7	4	-
조세	43	112	1	-
직능	211	129	3	-
청소년	5	69	12	2
해양	91	197	3	-
행정	141	28	13	6
형사	-	70	6	2
환경	-	155	29	5
건축	9	70	13	2
합 계	1,935	4,223	223	3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기관의 고유 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사례금 상한액, 신고기한 등)⁸³⁾을 참고하고, 동 지침의 직원 대외활동 유형 및 유형별 관리기준을 반영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구회 및 26개 연구기관은 대외활동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외활동에 대해 시간 또는 횟수 제한, 연간 총액 등 사례금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기관마다 달리 정하고 있어 일부 기관의 경우 무제한으로 대외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생략)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생략)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연구회, 산업, 통일, 교육, 교통, 법제, 해양, 행정, 형사, 건축 등 10개 기관은 대외활동의 시간 또는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연구회, 과학, 국토, 대외, 정보, 통일, KDI, 교육, 평가원, 교통, 노동, 직능, 청소년, 해양, 행정, 형사, 건축 등 17개 기관은 연간 총액 등 대외활동 사례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기관별 대외활동 관리 규정〉

(2025. 10. 기준)

기관 (약칭)	시간 등 제한	연간 총액 등 사례금 제한	미신고 적발 건수	미신고 제재 조치
연구회	-	-	-	o
과학	주 1회 4시간 이내(대학출강)	-	1	o
국토	월 28시간 이내(횟수제한 없음)	-	-	o
대외	(정기출강) 주 1회 4시간 이내, 업무보강계획 제출 (국외활동) 연 1회 제한, 본인의 연차 휴가 사용 (외부집필활동) 연간 6백만원 한도	-		o
산업	-	전체 대외활동 총액 제한기준은 없음. 단, 계약원고료의 경우 1회 500만원,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제한	-	o
에너지	(겸직활동) 주 1회 4시간 이내 (원외 대외활동) 월 3회 초과시 원장 승인	연간 총액 제한 기준은 없으나, 사례금 또는 대가 수령 시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상한액을 한도로 하며, 500만원이상의 대외활동의 경우 원장 사전 승인이 필수임	1	o

기관 (약칭)	시간 등 제한	연간 총액 등 사례금 제한	미신고 적발 건수	미신고 제재 조치
정보	출강의 경우 1학기 1과목에 한하며, 근무시간 중 출강으로 이석시간이 주 1회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활용	-	-	0
통일	- (출강, 수강 제외)	-	-	0
KDI	월 3회 (월3회 초과시 원장 승인 필수)	-	-	0
대학원	<교원> 겸직 2개 초과금지, 사외이사 등은 1인 1사 제한, 출강 주 1회 4시간 이내 1학기 1과목 <직원> 월 3회 초과 시 총장승인	연간 총액 제한 기준은 없으나, 강의,발표 1시간당 100만원 초과 금지, 기고 1건당 100만원 초과 금지	-	0
교육	-	-	-	0
평가원	- (외부 사업 참여의 경우 사업 1개 참여가 원칙이며 2개 이상 참여일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	0
교통	-	-	-	0
노동	① 출강은 주 1회 4시간 이내, 1학기 1과목으로 함 ② 일회성이 아닌 근무시간 중의 수강은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주 2일 이내로 함	-	-	0
농촌	월 3회	1,000만원 (원고료(장기 자문료) 기준)	-	0
법제	-	(다만, 원고작성의 경우 건당 사례금 총액한도 300만원, 연간 사례금 1,200만원)	-	0

기관 (약칭)	시간 등 제한	연간 총액 등 사례금 제한	미신고 적발 건수	미신고 제재 조치
보건	시간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횟수로 제한 (단, 국가·지자체 등은 한도 예외 적용) (일반활동 연 36회, 집필활동 연 4회로 제한)	집필활동에 대해서 건당 금액 제한 (집필활동 1건당 700만원 이하)	점검중	○
육아	월 12시간만 근무시간인정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금의 총액은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여성	* 연 50회 제한(고유업무에 따른 대외활동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활동, 언론활동, 학술지 게재, 서면 자문 등은 예외)	- * 외부공동연구 연간 15백만원 이내	-	○
조세	주 1회 4시간 이내 (한 학기 단위의 출강 유형의 경우 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	800만원 (공동연구, 각종 평가·자문 활동 중 1건당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금액 800만원 초과 불가)	-	○
직능	검직활동 성격의 집필활동은 연 1회 기관장 사전 승인 원칙, 월별 대외활동 횟수는 최대 5회까지 제한	-	-	○
청소년	연간 200시간 이내로 한다. 단, 학기단위 수강자에 한하여는 200시간을 초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강 외 추가적인 대외활동은 할 수 없다.	-	-	○
해양	-	-	-	○
행정	-	-	-	○
형사	-	-	3	○

기관 (약칭)	시간 등 제한	연간 총액 등 사례금 제한	미신고 적발 건수	미신고 제재 조치
환경	대외활동은 연구원의 고유사업과 연구 활동에 유익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대외활동은 제한함(「직원대외활동지침」 제4조(활동범위))	대외활동은 연구원의 고유사업과 연구 활동에 유익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대외활동은 제한함(「직원대외활동지침」 제4조(활동범위))	-	0
건축	-	-	6 (2023년도)	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와 같이 기관별로 대외활동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거나 달리 규정되어 있어 각 기관별 형평성의 문제, 무제한적 대외활동으로 인한 각 기관 고유 연구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구회는 대외활동에 제한을 두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소속 직원이 고유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7. 한국행정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적정 비목 편성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행정연구원”은 인문사회분야에 있어서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2,300만원(15.6%)이 증가한 165억 1,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한국행정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행정연구원	13,379	14,292	16,515	2,223	15.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6억 5,500만원(74.4%)이 증가한 273억 2,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148	15,665	27,320	11,655	74.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한국행정연구원의 ‘E-KIPA 지식행정 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는 각 장비 및 시스템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①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2억 850만원)와 ② 원격재택근무시스템 운영관리(4,750만원)에 총 2억 5,600만원이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비목으로 편성되었음.

〈한국행정연구원의 ‘E-KIPA 지식행정 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256,000천원
- 가.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08,500천원)
- 전산장비 유지보수: 49,000,000원*1회=49,000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50,000,000원*1회=50,000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3,000,000원*1회=73,000
 - 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0,000원*1회=20,000
 - 원격재택근무시스템 유지보수: 16,500,000원*1회=16,500
- 나. 원격재택근무시스템 운영관리(47,500천원)
- VDI 및 윈도우 라이선스 갱신: 47,500,000원*1회=47,500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이 중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각 시스템별로 외부의 전문 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달 비용을 집행하는 사업임.

〈한국행정연구원의 전산시스템 등 유지관리비 계약내역(2025년)〉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2025년도 전산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 1.~12. 31.	86,988	매달 집행
2025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 1.~12. 31.	69,841	매달 집행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연구원의 보안장비, 전산장비,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① 보안장비 유지운영(4,600만원), ② 전산장비 유지운영(7,900만원), ③ 정보시스템 유지운영(2,700만원)에 총 1억 5,200만원이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비목으로 편성되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52,000천원

가. 보안장비 유지운영(46,580천원)

- 내부 방화벽 유지보수 : 900×4회=3,600천원
- KVM 유지보수 : 770×4회=3,080천원
- 유무선 인증 유지보수 : 1,735×4회=6,940천원
- DDoS공격 차단 유지보수 : 900×4회=3,600천원
- OTP시스템 유지보수 : 1,250×4회=5,000천원
- SSO 유지보수 : 1,215×4회=4,860천원
- 개인정보보호솔루션 유지보수 : 700×4회=2,800천원
- 보안USB 유지보수 : 1,575×4회=6,300천원
- 웹메일 보안 SMS 서비스 : 300×4회=1,200천원
- 웹방화벽 유지보수료 : 1,000×4회=4,000천원
- 모의해킹(웹취약점점검) : 5,200×1회=5,200천원

나. 전산장비 유지운영(78,060천원)

- 서버, 스토리지 유지보수 : 11,980×2회=23,960천 원
 - 개인전산장비 유지보수 : 12,010×2회=24,020천 원
 - 네트워크 유지보수 : 7,520×4회=30,080천 원
- 다. 정보시스템 유지운영(27,360천 원)
- 오라클 DBMS 유지보수 : 6,000×1회=6,000천 원
 - 웹메일시스템 유지보수 : 7,000×1회=7,000천 원
 - 법인카드 정보수신 서비스 : 730×4회=2,920천 원
 - 전자증빙시스템 유지보수 : 2,860×4회=11,440천 원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동 사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각 장비 및 시스템별로 외부의 전문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대부분 분기별로 비용을 집행하는 사업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안장비 등 유지운영 계약내역(2025년)〉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서버 및 스토리지 유지보수	1. 1.~12. 31.	30,360	분기 집행
개인 전산장비 유지보수	1. 1.~12. 31.	44,848	매달 집행
네트워크 유지보수	1. 1.~12. 31.	28,644	분기 집행
웹메일시스템 유지보수	1. 1.~12. 31.	6,600	분기 집행
법인카드 정보수신 서비스	1. 1.~12. 31.	2,772	연 1회 (일시납)
전자증빙시스템 유지보수	1. 1.~12. 31.	10,890	분기 집행
내부 방화벽 유지보수	1. 1.~12. 31.	2,640	분기 집행
정보보안시스템(KVM, 유무선인증서버) 유지보수	1. 1.~12. 31.	9,528	분기 집행
DDoS공격 차단시스템 유지보수	1. 1.~12. 31.	3,421	분기 집행
OTP시스템 유지보수	1. 1.~12. 31.	4,752	분기 집행
SSO시스템 유지보수	1. 1.~12. 31.	4,620	분기 집행
개인정보스캔솔루션 유지보수	1. 1.~12. 31.	2,640	분기 집행
보안USB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 1.~12. 31.	6,000	분기 집행
웹방화벽 유지보수	1. 1.~12. 31.	3,696	분기 집행
보안 웹하드 유지보수	1. 1.~12. 31.	2,719	분기 집행
2025년 KISDB DBMS 유지보수	1. 1.~12. 31.	5,224	연 1회 (일시납)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두 사업은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연구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의 전문업체에 관련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므로, 필요 시 수리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집행하는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비목이 아닌 ‘외부용역비’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외부용역비⁸⁴⁾〉

구 분	내 용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연구기자재: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기·장비의 설치, 구입 및 유지관리비 임차료: 시설, 장비, 차량, 물품 등의 임차에 관한 경비
외부용역비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과제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지급하는 용역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 참고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다른 기관들도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용은 외부용역비로 집행하고 있음.

〈기관별 정보화 사업(일반사업)의 편성 비목〉

기관명	사업명	편성비목	비고
과학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국토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대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라이선스, 운영체제 및 보안솔루션 교체
산업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에너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정보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보안장비,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통일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유지	공공요금,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료, 백신 프로그램 갱신

84)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29, 33

기관명	사업명	편성비목	비고
KDI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라이선스 등
대학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공공요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교육인프라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평가원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교통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개인정보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3단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보안시스템 연간라이선스 구독
노동	통합유지보수 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농촌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 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법제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공공요금, 수용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인터넷회선 사용료, 서버 및 PC 소모품구입비, 인터넷망 PC 임대료, 라이선스 갱신 등
보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방화벽, PMS, 랜섬웨어방지솔루션, PC지키미 등
육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공요금,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클라우드 운영 비용 및 SSL복호화 장비 운영비용 등
여성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조세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사업	공공요금,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클라우드링 이용료, 네트워크 장비
직능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및 기간계시스템 운영지원	공공요금,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청소년	통합유지보수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제안서 평가수당, 통합유지보수 과업심의 등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수용비, 회의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조달수수료, 업무회의, 라이선스 연장, 노후 보안장비 교체
해양	정보보안시스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행정	E-KIPA 지식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라이선스 갱신

기관명	사업명	편성비목	비고
형사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	공공요금,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클라우드이용료, 라이선스 갱신료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환경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DDoS 보안장비 및 개인백업 솔루션 스토리지 구성
건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자료: 각 기관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따라서, 한국행정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E-KIPA 지식행정 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의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비’와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비목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가 아닌 ‘외부용역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221억 2,200만원) 대비 20억 9,300만원(9.5%) 증가한 24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로 구성된 기본사업비에 134억 5,700만원, 일반사업비로 편성된 특수사업비 111억 1,600만원 등임.

〈2026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839	22,122	24,215	2,093	9.5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1)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등의 사용기준 마련 필요

-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이란, 인공지능 기술의 한 유형으로서 방대한 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임.
- 특히 많은 수의 매개변수(parameter)를 활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에 프로그래밍되지 아니한 새로운 언어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스스로 나타나는 ‘창발적 특성’을 지님.⁸⁵⁾
- LLM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LLM은 일상부터 학술연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델은 GPT-4(Open AI), PaLM2(Google DeepMind), LLaMA2(Meta AI), Claude(Anthropic) 등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연구과제 수행 시 LLM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
- 이들 기관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출연금 및 정부수탁 과제의 수행 중 LLM 구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총 약 6억 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85) Brown, Tom B., Benjamin Mann, Nick Ryder, Melanie Subbiah, Jared Kaplan, Prafulla Dhariwal, Arvind Neelakantan, et al. 2020.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3: 1877 - 1901. <https://arxiv.org/abs/2005.14165>

〈과제 수행 과정에서 LLM에 지출한 금액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총 사용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14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2,558
국토연구원	23,16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119
산업연구원	688
에너지경제연구원	27,9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6,370
통일연구원	4,120
한국개발연구원	24,111
KDI 대학원	11,312
한국교육개발원	21,7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332
한국교통연구원	60,627
한국노동연구원	32,7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8,576
한국법제연구원	6,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138
육아정책연구소	9,79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6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25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84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8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8,237
한국행정연구원	45,52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42,407
한국환경연구원	52,678
건축공간연구원	41,077
합 계	685,48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LLM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집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LLM 사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불요불급한 용도로 LLM을 사용하거나 연구자 또는 연구과제별 중복구독 등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LLM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LLM 사용이 보편화되는 환경에서 연구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초데이터나 연구 결과물 등을 LLM에 무분별하게 입력할 경우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윤리의 일환으로 그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Open AI가 미국 연방정부의 1년 구독료를 1달러로 정하면서 공공부문의 데이터 보안에 유의하고 이를 모델학습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⁸⁶⁾, Grok도 1년 6개월 간 모든 미국 연방기관의 사용료를 42센트로 제시한 점⁸⁷⁾ 등을 고려하여 LLM 사용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용 절감 노력과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

86) 2025년 8월 6일, Open AI 보도자료(Providing ChatGPT to the entire U.S. federal workforce) 참조
https://openai.com/index/providing-chatgpt-to-the-entire-us-federal-workforce/?utm_source=chatgpt.com

87) 2025년 9월 25일, 미국연방조달청(GSA) 보도자료(GSA and xAI Partner on \$0.42 per Agency Agreement to Accelerate Federal AI Adoption) 참조
https://www.gsa.gov/about-us/newsroom/news-releases/gsa-xai-partner-to-accelerate-federal-ai-adoption-09252025?utm_source=chatgpt.com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ODA 정책 개선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의 사업 구조개편 요청(2025년 7월)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부터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모든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이관하였음.

- 이에 따라 2026년도 특수사업비 과제 중 하나로서 ‘경인사연 국제개발협력(R&D, ODA)’ 사업예산이 총 14억 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됨.
- 신규편성된 ‘경인사연 국제개발협력(R&D, ODA)’ 사업은 종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수행하던 6개 ODA 사업을 이관한 것으로 대부분 외부용역비로 구성되어 있음.

< ‘경인사연 국제개발협력(R&D, ODA)’ 사업의 세부 편성내역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통합 사업운영비: 200만원2. 외부용역비: 14억 1,800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롬비아 국가기술로드맵 개발 및 첨단기술 예측 전략 수립 정책자문 사업(과학기술정책연구원) 2억원- 우즈베키스탄 테크노파크 국가전략 수립 자문 사업(과학기술정책연구원) 2억원- 가나 국가 연구개발혁신 관리체계 수립 및 역량 강화 자문사업(과학기술정책연구원) 1억 9,400만원- 한국-인도네시아 산업연관통계 협력사업(산업연구원) 1억원- 과테말라 기반 중미지역 정책교육 거점화 사업(KDI 대학원) 4억원- 캄보디아 국가정책연구 역량강화 사업(KDI 대학원) 3억 2,400만원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은 새 정부 국정과제⁸⁸⁾에 따라 ODA에 대한 전략적 조정 강화를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ODA 사업을 통합·운영하려는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첫째, 본 사업은 예산 편성기관과 집행기관이 달라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ODA 사업을 통합하여 소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예산당국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후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교부만 할 뿐 사업의 기획·성과평가 등 실질적 역할 수행을 하지 않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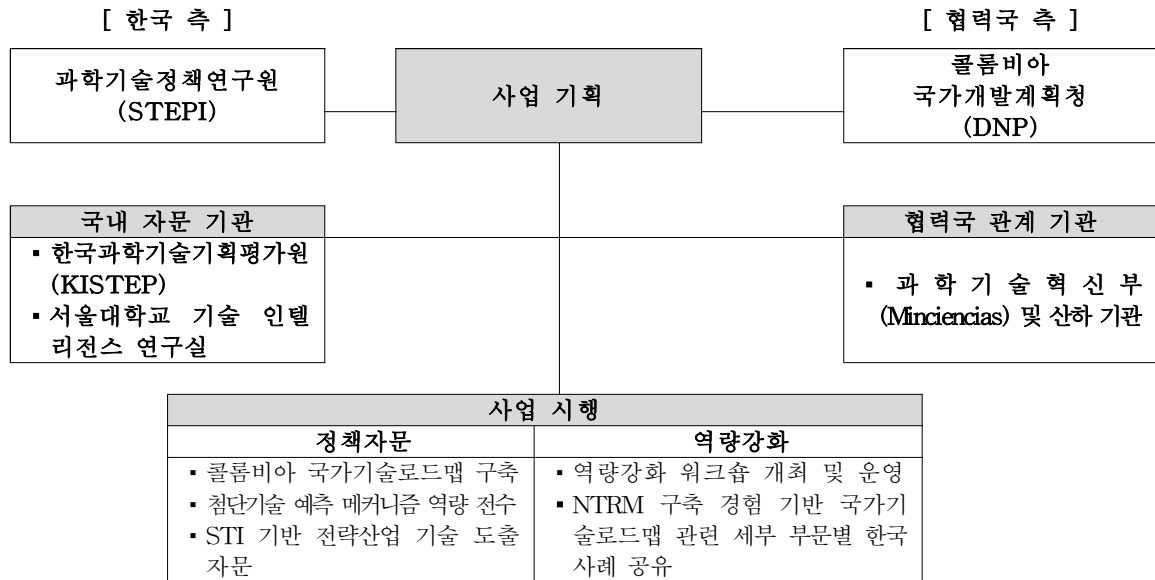
예를 들어 내년도 ODA 사업 중 하나인 ‘콜롬비아 국가기술로드맵 개발 및 첨단기술 예측 전략 수립 정책자문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할 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역할은 없는데도 해당 ODA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편성됨.

88)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강국 실현

(통합적·효과적 ODA) ODA 중장기 전략 수립과 통합적 무상원조 ODA 체계 구축을 통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ODA 수행

- 전략적 조정 강화,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역량 있는 시행기관 중심의 사업 수행, 산출 중심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ODA 체질 개선

〈콜롬비아 국가기술 로드맵 개발 및 첨단 기술 예측 전략 수립 정책
자문(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집행 절차〉



○ 둘째,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발생임.

새로운 ODA 집행 구조하에서는 2026년부터 예산을 편성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용역비로 편성된 ODA 예산을 계약당사자인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즉, 예년처럼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ODA 사업이 편성되어 있을 때는 각 기관이 사업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단순한 구조였으나, 2026년부터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ODA 사업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다소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셋째, 일부 ODA는 제외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예를 들어 KDI 정책대학원이 201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등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생 학위과정 장학지원’ 사업(2026년도 예산안 13억 7,900만원)은 ODA임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이관되지 아니한 채 KDI 대학원의 일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면밀한 준비 없이 2025년 7월에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으로,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ODA를 형식적으로만 통합하였을 뿐 실질적인 ODA 사업의 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26년에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ODA를 수행하는 예년의 방식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ODA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기획·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ODA의 기획·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조정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ODA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봄.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중복 우려 해소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은 한국경제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대외경제정책 및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 비전과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313억 4,000만원) 대비 41억 8,100만원(13.3%) 증가한 355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로 구성된 기본사업비에 287억 9,900만원, 일반사업비로 편성된 특수사업비 71억 7,200만원 등임.

〈2026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318	31,340	35,521	4,181	13.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6년도 기본사업비는 인건비 196억 9,100만원, 경상운영비, 37억 7,800만원, 기관고유사업비 53억 3,000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관고유사업비는 23개 연구과제로 구성된
기본연구사업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연구지원사업으로 구분됨.

- 이 중 23개 기본연구사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고유 임무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과제를 기획·심사하여 계획한 과제목록으로서
2026년에 편성된 예산은 총 13억 2,900만원임.

〈2026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관고유사업비 중 기본연구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2026년 예산안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의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	62
분절화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국제통화체제 변화 가능성 연구	68
AI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생산 요소 구조 변화	47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정책방향 연구	36
글로벌 산업정책 확산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42
경제안보 관점의 외국인직접투자 대응 전략 연구	62
국제통상환경의 지경학적 분석과 신통상질서 모색	78
AI 글로벌 가치사슬 경쟁력 분석과 한국의 참여전략 연구	46
미국·EU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 지형적 배경과 시사점	38
중국의 혁신 경쟁력 변화 요인 및 영향에 대한 연구	65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47
한·일 경제안전보장 협력 현황과 과제	35
한반도의 지경학 리스크 관리 전략 연구	35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발전 유형별 협력 방안	67
동남아 경제의 구조적 도전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방향	54
인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분석과 산업인력 협력 방안	54
중미 국가의 대미 수출 전진기지화: 북미 공급망 재편의 기회와 제약	51
아프리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자원 조달 방안 연구	46
푸틴 5기 러시아의 극동 및 북극 개발 전략과 정책 시사점	62
국제기구 조달 시장 참여 확대 방안 연구	36
자국우선주의 부상과 개발협력: 주요 공여국 ODA 정책의 재편과 시사점	97
글로벌 AI 규범 수립의 과제와 한국의 정책방안	54
수시연구사업	147
합계	1,32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년도 기본연구사업 중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정책방향 연구’(3,600만원)는 산업연구원의 과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5년 수행한 정부수탁 과제와 그 주제 및 방향이 매우 유사하여 연구과제의 중복 소지가 있음.

○ 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계획한 기본연구사업은 무역(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정책 연구라는 점에서 2026년도 산업연구원의 기본과제인 ‘무역질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 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5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협정 추진전략 검토’와 매우 유사함.

〈연구과제 비교〉

연구기관(실시연도)	과제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6년)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정책방향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협정 추진전략 검토
산업연구원(2026년)	무역질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

(자료: 전문위원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연구원과 설립 목적이 다르므로 연구과제명만으로는 연구주제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통상협상에, 산업연구원은 산업별 통상전략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2026년도 산업연구원의 과제는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치에 대한 대응전략을 연구할 계획인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과제는 통상협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라는 의견임.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5년도 수탁과제는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협정(EPA)의 잠재적 발굴 등에 초점을 두었으나, 2026년도 수행할 과제는 기존에 체결한 통상협정의 평가와 새로운 방향의 제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모두 통상 관련 연구 및 정보수집을 기관의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세 연구 모두 무역(통상)환경 변화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연구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 통상조치에 대한 대응전략과 통상협정의 방향 제시는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년도 해당 과제(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정책방향 연구) 예산 3,600만원은 전액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10. 산업연구원: 한-동남아 정책연구협력센터 사업 내실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연구원’ 사업은 산업·기술과 산업별 통상 및 지역산업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조사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239억 7,300만원) 대비 62억 5,700만원(26.1%) 증가한 30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로 구성된 기본 사업비에 276억 1,800만원, 일반사업비로 편성된 특수사업비 33억 5,600만원 등임.

〈2026년도 산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연구원	24,101	23,973	30,230	6,257	26.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산업연구원의 2026년도 특수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사업’(8억 4,700만원), ‘한-동남아 정책협력 연구센터’(6억

3,300만원) 등 9개의 일반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산업연구원 특수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62	104	104	-	-
동아시아 진출기업을 통한 공급사슬 분석	155	105	94	△11	△10.5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사업	1,927	1,285	847	△438	△34.1
한-동남아정책연구협력센터	188	745	633	△112	△15.0
인구감소 시대의 미래 산업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 연구	-	300	300	-	-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 방안연구	-	300	300	-	-
정보시스템및정보보호시스템	260	260	260	-	-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적 대응과 산업정책 체계 구축 연구	-	-	374	374	순증
정부지원사업비(산업)	-	-	444	444	순증
합계	2,999	3,437	3,356	△81	△2.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 중 ‘한-동남아 정책협력 연구센터’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⁸⁹⁾과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실시한 사업임.

- 구체적으로, 한-동남아 정책협력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함) 예산은 정책연구사업비 7,000만원, 한-동남아 정책지원센터 운영 3억 1,100만원, 국제세미나 사업 9,300만원, 정책다이얼로그 사업 1억 5,900만원으로 구성됨.

- 센터는 2024년도 1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시배정 통보를 받으면서 현지 연락사무소 개소 등이 지연되었고, 공무원 파견 계획 역시 행정안전부의 별도정원 승인 불허로 변경되면서 2024년 12월에서야 법인 등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성과 부진, 예산집행을 저조, 예산 집행방식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지연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정 및 재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요구를 의결하였음.

-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음.

- 첫째, 사업의 성과 저조임.

89)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10개국임.

산업연구원은 본 사업을 통해 2025년 3월에 아세안(ASEAN) 측 싱크 탱크와 정기적인 정책협력플랫폼(AKRD: ASEAN-ROK Think-tank Dialogue on Economic and Trade Policy)을 출범하고, 6월에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니켈 전방 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다이얼로그 대화를 실시한 것 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임..

내년도 사업도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획되어 있고, 정책다이얼로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 예산과 아세안 국가의 싱크 탱크 연사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국제세미나 예산이 각각 편성(1억 5,900만원, 9,300만원)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 둘째, 예산 편성의 문제임.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구원은 2026년도 예산안에 여전히 사업비 항목에 현지 연락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를 약 1억 7,400만원 편성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견자의 해외근무수당 4,600만원, 자녀학비 지원 3,800만원 등을 비정규직 인건비로 편성하고, 파견자의 주택 임차료 6,500만원을 사업비의 임차료로 편성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해외파견자의 수당 등 인건비와 주택 임차료는 모두 기본

사업비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파견자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기본사업비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와 사업비 항목을 구분함으로써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인건비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연구를 장려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센터에는 산업연구원 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 및 대한상공회의소 직원 1인도 각각 파견되어 있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기본사업비 내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이처럼 산업연구원이 국회의 시정요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 운용 지침에 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각각 예산을 이관할 필요가 있음.

〈현지 연락사무소 직원 관련 예산 편성 현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업인건비(비정규직 인건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근무수당(박사급) 4,600만원 (= \$2,803×1명×12개월×1,380원/달러)- 가족수당 1,300만원 (배우자:재외근무수당 ÷ 4, 자녀: 1인당 \$60×12개월×1,380원/달러)- 학비 지원 3,800만원2. 기타수용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견직원 보험료 200만원3. 임차료<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견직원 주택 임차료: 6,500만원 <p>합계: 1억 7,400만원</p> |
|--|

(자료: 산업연구원)

○ 셋째, 파견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산업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위원 1인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파견하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예를 들어 내부기준에 따라 4급 상당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여 재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주택임차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아니한 채 파견인력이 계약한 금액을 실비로 지급함.

즉, 주택임차료의 경우, 공무원은 외교부예규인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외교부로부터 임차료 지원 상한금액을 통보받고 있고,

2025년 기준 4급 경력 5년 이상인 공무원의 월 상한액은 \$3,628, 4급 경력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월 상한액은 \$3,465이고, 3급 공무원의 월 상한액도 \$3,929인 데 반해, 산업연구원은 파견자에 대한 주택임차료로 월 \$3,95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임차료 상한 없이 파견자가 계약한 주택 임차금액을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는 동 센터에 파견 중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남.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센터에 행정직원 1인을 파견하면서 재외근무수당 3,700만원, 자녀 1인에 대한 학비 지원 3,180만원, 주택임차료

7,500만원을 책정하는 등 과도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지원함.

- 넷째, 센터에는 산업연구원 직원뿐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직원도 각각 1인도 파견 중인데, 산업연구원은 이들 직원의 비자 유지를 위한 대행수수료도 2,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산업연구원은 센터의 운용 주체가 산업연구원이고 각 기관의 인력은 파견 신분이며 실무적으로 비자 대행은 모든 파견인력과 가족이 한꺼번에 대상이 되므로 산업연구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파견자의 급여, 파견비용, 주택임차료 등 일체의 비용을 각 기관이 지불하고 있다는 점, 대한상공회의소는 순수 민간단체인데 해당 인력에 대한 비자 대행수수료를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연구원은 센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파견인력에 대한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기관의 직원에 대한 비자 대행비용은 해당 기관이 직접 지출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센터 파견인력에 대한 지원 금액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예산 반영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156억 6,500만원) 대비 116억 5,500만원(74.4%) 증가한 27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로 구성된 기본사업비에 212억 1,900만원, 일반사업비로 편성된 특수사업비 61억 3,400만원 등임.

〈202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162	15,665	27,320	11,655	74.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조⁹⁰⁾와 같은 영 별표1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중 하나로서 무정전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⁹¹⁾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영 제531호 부칙 제3조⁹²⁾에 따라 인가 및 신고제도 도입 전에 설치되었거나 영 시행 당시 설치 중인 무정전전원장치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5년 3월 보유하고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해당 장치가 내용연수를 초과하였으므로 교체할 것을 권장 받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 당국과의 협의 당시 교체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올해 9월 29일에 청사 인근 케이블 사고로 순간 정전이 3회 발생하였으나, 노후화된 무정전전원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90)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91) 무정전전원장치는 정전이 발생하였을 때 데이터 소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말함.

92) 제3조(무정전전원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공사 중인 무정전전원장치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공사 중인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준공일부터 1년 이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기존 무정전전원장치 대비 정전 대응력이 약 1/6 수준인 저스펙 장치를 임시로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기능이 손실된 상태임.
- 무정전전원장치는 정전에 따른 데이터 유실 등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장치이고, 현재 설치·운용 중인 배터리의 기능이 손실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 등을 감안하면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한 예산 2억 2,600만원의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배상금 지급 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 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6억 3,300만원(62.9%)이 증가한 301억 3,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한국교통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교통연구원	18,555	18,505	30,138	11,633	62.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한국교통연구원은 2001년 용인시의 의뢰로 ‘용인경전철 건설 타당성 분석 및 실행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해당 보고서에서 1일 평균 추정 이용수요를 13만 9천명으로 예측하였음.
- 하지만 실제 탑승인원은 예측된 수요의 5~1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용인시는 막대한 사업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용인시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대법원은 올해

7월 한국교통연구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함.

-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가 타당성 분석에 반영된 것이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인정된 것에 따른 것임.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약 18km 구간에 경량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용인시가 주무관청임.
- 2000. 9. 6.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인경전철 건설 타당성 분석 및 실행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의뢰
- 2001. 9. 5. 한국교통연구원이 수요 예측 결과가 포함된 용인시 경량전철 실행플랜을 용인시에 제출
- 2004. 7. 27.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 체결(실행플랜의 수요 예측 결과를 기초로 체결)
 -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6,970억 원, 운영비 7,450억 원, 2008년 기준 1일 예상교통 수요 13만 9,000명을 기준으로 30년간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이 정해짐
- 2013. 7. 25.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변경협약 체결⁹³⁾
- 2013. 4. 26. 용인경전철 운행 개시
 - 운영 첫 해인 2013년의 실제 이용수요는 1일 평균 약 9천 명에 불과, 2017년의 실제 이용수요는 1일 평균 27천 명
- 2013. 4. 11. 용인시 주민들 주민감사 청구
- 2013. 10. 10. 용인시 주민들 주민소송 제기⁹⁴⁾
- 2017. 1. 16.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13구합9299) : 각하
- 2017. 9. 14. 제2심 판결(서울고법 2017누35082) : 각하
- 2020. 7. 29.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두63467) : 일부 파기환송 및 일부 상고기각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사례⁹⁵⁾
- 2024. 2. 14. 파기환송심(서울고법 2020누50128) : 일부 인용
 - 전임 용인시장의 수요 예측 부실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연구원들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부분에 대하여 214억 6,809만 5,900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사용자책임 부분에 대하여 42억 9,361만 9,180원의 주민소송 청구를 인용
- 2025. 7. 16. 재상고심(대법원 2024두39158) : 상고기각 및 일부 파기환송⁹⁶⁾

(자료: 대법원 2024두39158 주민소송 사건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용인시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2025년

93)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연간사업운영비보전(운임수입이 당해 분기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용인시가 부족 금액을 보조금 등으로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 포함

94) 2011년 당시까지 투입된 1조 32억 원 등을 용인시가 입은 손해로 보아 용인시장을 상대로 ‘전임 용인시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

95) 용인경전철 사업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된 것이라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장, 수요예측조사 용역을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등으로 입은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 가능

96) 주민소송 청구는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되었고, 수요 예측에 관한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개인들에게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 개인들의 행위가 용인시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인지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만 파기·환송함.

9월 15일까지 42억 9,361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할 것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2025년 8월 5일 발송하였고,⁹⁷⁾ 2025년 10월 말 현재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임.

○ 이에 대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은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크고 별도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적립금⁹⁸⁾을 활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연구개발적립금은 정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어⁹⁹⁾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함.

- 현재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승인 절차¹⁰⁰⁾의 최종 단계인 이사회 승인에 앞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

○ 그런데,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장기화될 경우 지연이자의 발생¹⁰¹⁾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보다 노력하여 지급 재원과 시기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97) 주민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용인시는 전임 용인시장에 대해서는 214억 6,809만 5,900원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는 그 중 42억 9,361만 9,180원을 전임 용인시장과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함.

98) 연구개발적립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에 대해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함(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99)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10)은 연구개발적립금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①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연구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②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③ 기관발전사업(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포함)에 사용하되, 정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100) 현재 이사소위 승인까지 완료된 상황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승인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연구기관) - 사업계획서 사무국/기평위 검토(연구회) - 사업계획서 소위 심의의결(이사소위) - 사업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심의 의결(이사회)

101)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¹⁰²⁾

□ 따라서, 한국교통연구원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금 지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02) 이에 대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은 중앙정부 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정책지원 과제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참여를 지양하는 형태로 과제선정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 불확실성이 큰 연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예산·연구기간·투입연구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강화하는 등 과제 선정 절차를 보완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13. 한국법제연구원: MOU 체결을 전제로 한 기관장의 국외 여비 감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법제 및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는 등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4,400만원 (18.1%)이 증가한 178억 9,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법제연구원	13,522	15,154	17,898	2,744	18.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AI·데이터법제연구사업’은 법제도적 관점에서 AI 개발·혁신·활용 촉진 및 위험·부작용의 종합적 검토, AI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수집 및 활용 분야의 법적 장애 요인 해소 및 AI의 잠재적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성·신뢰성 평가 등 규범적 규율 체계 연구하는 3개년 사업으로, 2026년도는 사업의 3차연도로 6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① AI법제연구, ② 데이터법제연구, ③ 융합산업법제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AI·데이터법제연구사업 주요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2026년도 예산안
AI법제연구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및 AI관련 정책 지속 추진 등 AI법제 쟁점 및 입법과제 연구	200,000
데이터법제연구	· AI 성능 향상의 핵심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수집·활용을 저해하는 법적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AI와 데이터를 연계하는 종합연구	200,000
융합산업법제연구	·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이후 AI가 활용되는 개별 정책 영역 및 융합 산업 등에 대한 입법 정비 방안 마련 연구	200,000
합 계		600,000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이 중 ‘AI법제연구’에서는 미국의 AI시장을 파악하고 해외 선도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국외여비 3,381만원을 편성하였음.
-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관련하여 법·제도·규제 등을 연구하는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 HAI(Human-Centered AI)와 공식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하여 MOU를 추진하고 있고, 다수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규제법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운용되는지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고민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함.

<국외출장 계획(안)>

- 주관 부서 및 인원: 원장, AI·데이터법제센터(총 4명)
- 출장목적: 연구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미국의 AI 시장 파악 및 인공지능 사회적 수용 연구 선도기관인 스탠포드대학과의 네트워크 및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 출장기간: 4월(6박 8일)
-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샌프란시스코(Stanford AI Lab, HAI / 구글·메타 본사 등, 상세일정 미정)
- 출장계획(안)
 - 스탠포드 대학 AI Lab, HAI(Human-Centered AI) 등과의 MOU 체결
 - AI 국제학술세미나 (가제) “인공지능 규제 현황과 전망” 개최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기관장의 국외여비를 동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외여비 산출내역>

구분	원장	직원
항공료	7,447,000원 (7,447,000원×1명)	(연구위원) 6,984,000원(3,492,200원×2명) (부연구위원) 3,492,000원(3,492,200원×1명)
숙박비	3,220,000원 (\$389×1,380원×6일×1명)	(연구위원) 3,692,000원(\$223×1,380원×6일×2명) (부연구위원) 1,457,000원(\$176×1,380원×6일×1명)
체제비	2,318,000원 (\$210×1,380원×8일×1명)	(연구위원) 3,135,000원(\$142×1,380원×8일×2명) (부연구위원) 1,225,000원(\$111×1,380원×8일×1명)
기타	(여행자보험비) 160,000원 (비자발급비) 50,000원	(여행자보험비) 480,000원(160,000원×3명) (비자발급비) 150,000원(50,000원×3명)
합계	13,195,000원	20,615,000원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한국법제연구원의 내부 규정인 「교류협정(MOU)체결에 관한 예규」¹⁰³⁾에 따르면 협정서의 서명 권한은 원장에게 있으나, 2025년 10월 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 스탠포드대학 HAI(Human-Centered

103) 제6조(협정서의 서명) ① 협정서는 원장과 체결기관의 장이 부서한다.

② 센터와 부서의 실무적 필요에 의하여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구원과 체결대상기관의 업무담당 책임자가 함께 서명할 수 있다.

AI)와의 MOU 체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은 연구지원사업으로 ‘국내외연구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수행 중임(2026년도 예산 1억 4천만원).¹⁰⁴⁾
- 해당 사업에서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MOU 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MOU 체결을 위한 출장비용은 ‘국내외연구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국내외연구네트워크구축사업 주요 사업내용〉

- ☐ 관·산·학·연 신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외연 확장
 - 학계, 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을 포함한 법제연구 유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신규 교류 추진 및 협력 활성화
 - 국내외 법제관련 연구자·학자·실무가들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 업무협약(MOU) 체결을 바탕으로 전문가 초청 포럼, 공동연구 등 연구교류 확대
- ☐ 국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 구축
 -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의 법제 관련 연구 동향 조사
 -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연구기관 방문을 통한 성과확산 및 국제교류 활동 벤치마킹
 - MOU 체결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 연구성과의 해외 확산을 통한 기관의 국제적 위상 제고
- ☐ 국가 입법정책에의 기여를 위한 입법동향 및 긴급현안 조사

¹⁰⁴⁾ 기관고유사업의 연구지원사업 중 하나임.

<연구지원사업>

(단위: 천원)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7건	1,331,000		
1	법령번역사업	360,000	1.1.~12.31.	국제협력본부
2	국내외연구네트워크구축사업	140,000	1.1.~12.31.	기획경영본부
3	연구기획평가사업	202,300	1.1.~12.31.	기획경영본부
4	연구성과확산사업	185,000	1.1.~12.31.	기획경영본부
5	한국법교류협력사업	245,700	1.1.~12.31.	국제협력본부
6	법제정보아카이브운영사업	135,000	1.1.~12.31.	기획경영본부
7	청년인턴	63,000	1.1.~12.31.	기획경영본부

- 국회 및 정부부처의 입법수요와 법제현안과제 등 파악 및 도출
- 연구보고서, 외국법제정보, 입법동향 분석자료 등 유관부처에 배포
- 정부 각 부처와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추진의 밑거름이 되는 입법자료 제공
- 법제현안에 대한 공동학술행사 개최
 - 법제처, 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공동학술행사 기획 및 운영
 - 입법연구 확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의 장 마련 및 입법정책 연구 발전 모색
 - 법제연구 성과 공유 및 지속적인 교류 네트워크 강화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 따라서, 한국법제연구원은 ‘AI·데이터법제연구사업’의 여비 중 MOU 체결을 전제로 한 기관장의 국외여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음.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
- ☐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382억 7,800만원) 대비 90억 8,200만원(23.7%) 증가한 47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로 구성된 기본사업비에 395억 9,700만원, 일반사업비와 시설비로 편성된 특수사업비 82억 9,500만원 등임.

〈2026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5,855	38,278	47,360	9,082	23.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1)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 수행방식 변경 검토 필요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특수사업비 중 일반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

(19억 2,000만원), ‘재정패널 DB구축사업’(18억 5,300만원) 등 13개 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특수사업비 중 일반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부지원사업비	-	-	1,920	1,920	순증
공공기관 연구사업	887	912	912	-	-
재정전문가 포럼 운영	139	135	135	-	-
재정정책 및 예산분석	960	445	784	339	76.2
아태재정협력사업	260	247	267	20	8.1
재정성과평가사업	290	223	273	50	22.4
국가회계재정통계사업	481	660	500	△160	△24.2
세정연구사업	606	417	547	130	31.2
민간 및 정부투자 정책분석	288	178	110	△68	△38.2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	178	300	300	-	-
조세교육 운영사업	280	550	400	△150	△27.3
재정패널DB 구축사업	1,889	1,653	1,853	200	12.1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294	294	294	-	-
합계	6,552	6,014	8,295	2,281	37.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사업으로 미래 재정부담의 주체인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목적의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을 2022년부터 수행 중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3억원이 편성됨.

□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문가 활용비 500만원, 외부용역비 2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편성된 예산의 전액을 외부용역비로 지출하는 구조임.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의 세부 편성내역〉

1. 전문가 활용비
- 위탁관련 외부 회계감사 400만원
- 사업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100만원
2. 외부용역비
- 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1억 800만원
- 대학생 활동지원비 2,000만원
- 행사 대행비 2,800만원
- 발대식 900만원
- 멘토링 워크숍 3,600만원
- 최종심사 및 보고회 2,500만원
- 상금지급 2,100만원
- 결과보고서 제작 400만원
- 기타 관리비 등 4,400만원
합계: 3억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와 같은 편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

- 첫째, 정부가 사실상 출연금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본 사업은 2022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예산액의 대부분을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NSI(舊 국가경영 전략연구원)에 위탁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을 띤.

2026년도 예산안에서도 3억원의 예산 중 2억 9,500만원이 외부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고, 세부 편성 내역도 예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출연금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을 교부하는 것¹⁰⁵⁾으로서,

보조금과 달리 집행잔액 및 이자액의 반납의무 등이 없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존속기한과 연장평가, 실적보고, 엄격한 교부절차 등 법정 통제장치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조금과 같은 성격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우회하여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둘째, 본 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역할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출연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조세와 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함인데, 예산의 대부분을 외부용역비로 지출하는 방식의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할 근거가 미약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사업에서 ‘국민과의 지식 공유 및 소통을 통한 재정 민주주의 기반 강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업에서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아닌 그 목적에 불과함.

105) 송병철 외 4인,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2. p.3

○ 셋째, 출연금 예산 중 약 1억 800만원은 위탁수행기관 소속의 책임 연구원 등의 인건비로 편성¹⁰⁶⁾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가 민간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결과를 가져옴.

□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은 사업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즉,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내용을 위탁 하더라도 출연금을 받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2) 조세교육운영사업 운영방식 개선 필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사업으로 조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양과 바람직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하여 2023년부터 ‘조세교육 운영사업’을 수행 중이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4억원이 편성됨.

○ 조세교육 운영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놀봄사업, 함께하는 세심교실(체험형 교육),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구성됨.

□ 2026년도 예산안에는 예년과 달리, 약 1,200만원의 국외출장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 목적이 다소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외출장 예산을

1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NSI 소속 연구원 8명의 8개월치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음.

‘중등 자유학기제 맞춤형 조세교육사업’의 교재 제작과 ‘초등 함께하는 세심교실 조세교육사업’의 교육교재 설명회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출장 등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겠다는 입장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불요불급한 국외출장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변경한 계획안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봄.

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환경 변화를 감안한 사업 추진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및 그와 관련된 물류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국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1억 6,400만원(48.2%)이 증가한 312억 6,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305	21,103	31,267	10,164	48.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해운물류 공급망 북중미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북중미 지역에 물류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2026년도는 사업의 2차연도로 3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① 글로벌 물류 공급망 리스크 대응 컨퍼런스 운영, ② 북중미 물류공급망 정책 및 시장 동향 연구, ③ 북중미 진출 물류 기업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해운물류 공급망 북중미 협력체계 구축사업 주요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2026년도 예산안
글로벌 물류 공급망 리스크 대응 컨퍼런스 운영	· 한미 해운조선물류협력 컨퍼런스(연 1회)	102,211
북중미 물류공급망 정책 및 시장 동향 연구	· 북중미 물류동향 분석(한미 연구진 공동, 연 1편) · 북중미 물류정보지(현지 전문가 중심, 월 1회 총 12편) · 북중미 물류시장 이슈 연구(연 2편) · 북미 국적물류기업협의회 운영(반기별 1회)	151,549
북중미 진출 물류기업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 북미 공급망 지도 제작 및 리스크 관련 DB 구축 · 국내 북미 물류시장 진출 방향 세미나	72,240
합 계		326,000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이 중 ‘북중미 물류공급망 정책 및 시장 동향 연구’에는 총 1억 5,15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북중미 물류시장 주요 동향에 대한 한미 연구진의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북중미 물류공급망 정책 및 시장 동향 연구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내용	2026년도 예산안
수용비	사무용품비,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 제작, 복사비	10,485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전문 소프트웨어 사용료	600
여비	국외출장 여비	34,014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특근매식비, 학회/컨퍼런스 등록비	6,050
전문가 활용비	물류공급망 이슈 원고자문	15,000

구 분	세부 내용	2026년도 예산안
회의비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5,4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국제공동연구	80,000
합 계		151,549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미국 전역(동부, 중부, 서부)을 출장지로 하는 60일의 장기 국외출장을 계획하였는데, 미국 전역에 분포된 우리 제조 및 물류 기업 본사 및 거점 등 방문,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세미나 등 개최, 공동연구 점검 및 집중 회의를 위한 것임.

〈국외출장 계획(안)〉

- 출장기간: 1회 장기출장, 총 2개월(60일)
- 출장지: 미국 전역(동부, 중부, 서부, 남부)
 - ① 동부(뉴욕/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조지아), ② 서부(LA), ③ 중부(시카고), ④ 남부(텍사스)
- 출장내용
 - 현지 한국기업 공급망 및 물류 애로사항 파악
 - 국제컨퍼런스 개최(1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세미나(서부·동부 총 2회)
 - 공동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보고서 집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지난 9월 미국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규모로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출장을 수행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임.

- 이에 대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미국 이민국의 한국기업 단속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출장 기간을 축소(60→30일)하고, 장기체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회에 걸쳐 미국 동부·

서부 지역으로 출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 계획을 변경하며, 방문이 어려운 일부 지역 또는 물류현장 관련 현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임.

〈국외출장 변경(안)〉

구 분	기존(안)	변경(안)
출장 기간	- 1회 장기출장, 총 2개월(60일)	- 2주씩 2회 분할 출장, 총 1개월(30일)
출장지	- 미국 전역(동부, 중부, 서부, 남부) · ①동부(뉴욕/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조지아), ②서부(LA), ③중부(시카고), ④남부(텍사스)	- 미국 동(남)부·서부 중심 · ①동(남)부(뉴욕/뉴저지, 애틀란타), ②서부(LA) * 업무수행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중부 지역(시카고 등)은 출장지역에서 제외
출장 내용	- 현지 한국기업 공급망 및 물류 애로 사항 파악 - 국제컨퍼런스 개최(1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세미나(서부·동부 총 2회) - 공동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보고서 집필	- 현지 한국기업 공급망 및 물류 애로 사항 파악 - 국제컨퍼런스 개최(1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세미나(서부·동부·동남부 총 3회) · 최근 1~2년 한국기업 투자가 집중된 동남부(애틀란타) 등 지역 세미나 개최 추가 * 공동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보고서 집필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여 수행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출장계획 변경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며, 변경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당초 계획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6. 한국환경연구원¹⁰⁷⁾: 지구환경정보센터의 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환경연구원” 사업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3억 8,200만원(32.2%)이 증액된 302억 8,2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액 요인은 PBS제도 폐지에 따른 인건비 증액(65억 9,600만원)과 Post 미세먼지·기후위기 시대의 딜레마, 고농도 오존 대응전략(2억 1,500만원), 해상풍력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에 따른 지속가능한 환경성 평가 방안연구(2억 1,500만원) 등의 신규편성임.

〈2026년도 한국환경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환경연구원	20,956	22,900	30,282	7,382	32.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7) 세부사업: 한국환경연구원(1554-301)

2) 검토의견

- 지구환경정보센터 사업은 해외환경정책 정보 수집·분석·공유,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정보 제공, 국내 환경법제, KEI 연구성과 및 국제협력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사업비에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지구환경정보센터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지구환경정보센터 운영	39	39	39	39	-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지구환경정보센터는 최근 3년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을 살펴보면, 지구환경전문가 인력교류 및 포럼 개최, 한국환경연구원의 영문홈페이지를 통한 영문정보·자료 제공, 「Global Environmental Issues」, 「해외환경정책동향」 각 연 2회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지구환경정보센터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 내역
2022	- 국제 환경 트렌드 및 주요국 환경정책 동향 파악·분석 - 해외환경정책동향 등 지구환경정보 공유·확산을 위한 간행물 발간 - 지구환경전문가포럼 운영을 통한 지구환경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 - KEI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환경 법제 관련 영문정보·자료 제공

연도	사업 내역
2023	- 해외 환경정책동향 정보 수집·분석 및 KEI 간행물 「해외환경정책동향」을 통해 해당 정보 공유·확산 - <u>영문 간행물 「Global Environmental Issues」 발간</u>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의 글로벌 환경 현안에 관한 지식 및 의견 공유 - <u>지구환경전문가포럼 운영</u>을 통해 글로벌 환경 현안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 의견 교환 - <u>KEI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환경 법제 관련 영문 정보·자료 제공</u>
2024	- 내외 환경정책동향과 이에 관한 전문적 분석결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u>영문 간행물인 「Global Environmental Issues」 발간(2회)</u> - 글로벌 환경 현안과 국내외 주요 환경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u>해외 환경정책동향</u>」 발간(2회) - 「<u>지구환경포럼</u>」(4회) 운영을 통해 글로벌 환경 현안 및 연구 동향에 관한 <u>전문가간 의견 교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u> - <u>KEI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이용자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 법제 관련 정보·자료 제공</u>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안 설명자료)

□ 연구회의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연구사업 중 연구지원사업은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회의, 번역, 간행물 발간 등을 하는 사업이고, 일반사업은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정부대행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을 말함.

〈연구기관 연구사업 구분〉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

구분	내용
	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 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 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자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 운용지침)

□ 지구환경정보센터 운영은 한시적 사업이 아닌 2006년부터 실시해온 계속 사업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정책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간행물의 주기적 발간을 통해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확산함으로써 연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지원 사업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환경연구원은 지구환경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일반사업이 아닌 기관고유사업내 연구지원사업에 편성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지업 사업 내역(안)〉

(단위: 천원)

구분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개요
합계	총 8 건	648,079	
1	학술 및 정보교류 사업	63,000	○ <u>국내·외 학술활동 지원 및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교류 확대</u> ○ <u>정보교류 활동 및 지원</u>

구분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개요
			○ <u>주요 환경현안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참석을 통한 의견 수렴 및 협력사업 추진 도모</u>
2	연구사업관리	51,000	○ 연구성과 향상 및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평가 실시 ○ 연구성과 평가결과 피드백 제도 운영으로 연구결과물 평가 및 추진성과 분석 ○ 연구윤리 자체검증체계 강화 체계 운영 등
3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 네트워크(NISD) 운영	90,079	○ <u>국제기구, 해외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관련 기관 등)</u> ○ <u>지속가능발전 관련 글로벌 연구성과 확산 지원(KEI 영문 홈페이지, 영문 뉴스레터 연계 등)</u> ○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4	연구기획사업	121,548	○ 연구사업 기획을 위한 정부부처와의 정책연구협의회 운영 ○ 환경정책연구사업 계획 마련 ○ 연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워크숍 실시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과제 발굴 및 추진 ○ 정부 정책 수립의 기여도 제고를 위한 현안대응형 수시과제 발굴 및 추진
5	연구성과확산사업	74,502	○ 연구성과보고회 개최, 언론 모니터링·홍보, 연구원 브로슈어 제작 지원 등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원 홍보 강화 ○ <u>환경정책(학술지), 환경관련 기획도서 등 간행물 발간 등 국내외 환경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u> ○ 연구성과 홍보를 통해 정책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고 환경분야 정책 논의 활성화에 기여
6	정보자료운영	62,138	○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구·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자료 구독 및 통합검색 제공 ○ 전자도서관을 통한 소장자료 및 발간물 전자원문 제공 ○ 구독 자원 이용 활성화 및 논문 작성 지원을 위한 학술정보 리터러시 교육 제공
7	전산운영	91,812	○ 업무 프로세스 분석과 지속적인 개선, KEI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활용성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행정 업무수행 환경 마련 ○ 정보보안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보안 취약점 등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 유실 방지와 데이

구분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개요
			터 복구를 위한 백업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연구성과물을 비롯한 KEI 정보자산의 안전한 보호
8	청년인턴	94,000	○ 경제·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기관 청년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준비자의 정규직 취업 촉진 및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률 제고에 기여 ○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비 제공 등으로 인턴직원의 원활한 취업활동 지원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문 의 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담당	(6788-5111) (6788-51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담당	(6788-5109) (6788-5114) (6788-5115)